

사례로보는 재중 투자기업 청산실무 가이드



목차

제 1 장 중국 청산 관련법률의 변화와 특징	5
제 1 절 청산의 개념	5
제 2 절 청산 관련 법률의 역사와 현행 법률체계	7
1. 청산 관련 법률의 변화 역사	7
2. 현행 법률 및 체계	8
3. 현행 법률 체계에 따른 적용법률 충돌문제와 해결방법	9
제 3 절 舊法 <청산방법>과 新法 <회사법>의 비교	11
1.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의 구분 제거	11
2. 청산기간의 제거	11
3. 사법해산 방식의 신설	12
제 2 장 청산의 기본절차	13
제 1 절 해산 사유와 청산방법	13
1. 자체 청산	13
2. 강제 청산	15
제 2 절 청산절차	16
1. 해산사유 발생	17
2. 청산준비	18
3. 해산에 관한 비준신청	28
4. 청산조 구성 및 비안	31
5. 청산 통지, 공고 및 채권등기	47
6. 자산정리 및 청산방안 제정	52
7. 세무등기 말소	61
8. 세관등기 말소	70
9. 재정등기 말소	73
10. 외화계좌, 외환등기증 말소 및 청산재산 송금	78
11. 인민폐 계좌 말소	85
12. 기업법인 영업집조 말소	86
13. 조직기구대마등기 말소	95
14. 통계등기 말소	95
제 3 장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검토	96
제 1 절 청산비용의 추정	96
1. 2 면 3 감의 기업소득세와 지방세 우대혜택의 반환	98
2. 채투자 기업소득세환급	98
3.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	99
4. 수입설비의 면세	100
5. 무상제공설비	100
6. 가공무역용 보세원재료 수책핵소	101
7. 수출대금 외환핵소	101

8. 수입대금 외채등기	102
9. 임대계약기간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102
10. 사회보험료 미납분	103
11. 경제보상금의 지급	103
12. 미납 자본금 문제	106
제 2 절 청산과 세무	106
1. 외상투자기업의 청산관련 세법	106
2. 경영소득과 청산소득의 구분	107
3. 청산소득의 계산	108
4. 청산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109
5. 청산 개시 이후의 세무 관리	110
제 3 절 비정상적 철수에 따른 법률적 문제	110
1. 해당기업 및 법정대표의 행정적 책임	111
2. 해당기업 및 법정대표의 민사책임	111
3. 해당기업, 법정대표 및 투자자의 형사책임	112
제 4 절 청산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	113
1. 회사서류의 정리와 보관	113
2. 기업 재산의 관리 강화	113
3. 신고한 채권에 대한 확정 및 처리	113
4. 자산의 처분방법과 부채의 상환방법에 대한 논의	114
4. 노동문제의 원활한 해결	115
제 4 장 청산과정에서의 애로사항	117
제 1 절 청산관련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117
1. 심사비준기관의 업무처리 회피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117
2. 기업해산 및 청산관련 법규에 대한 지방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117
3. 청산완료 기한에 대한 법규의 부재	118
4. 각종 행정부문 담당자의 업무처리 경험 및 능력 부족	119
제 2 절 청산진행 실무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	119
1. 대량감원의 어려움	119
2. 공장 임대인과의 계약분쟁	119
3. 기업 소유의 토지 및 공장 매각의 어려움	120
4. 내부 관리직원의 비협조 또는 고발 위협	120
5. 파산청산 진행시 회계자료 부실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려움	121
6. 합자기업 중국 파트너의 비협조에 따른 청산 곤란	121
제 5 장 청산사례분석	122
제 1 절 성공사례	122
1. 산동성 A 전자부품회사	122
2. 천진시 B 전자부품회사	124
3. 산동성 C 소품회사	126

4. 산둥성 D 전자부품회사	127
5. 북경시 E 광고회사	129
6. 북경시 F 캐피탈 대표처	131
제 2 절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기업 청산의 특징	134
1. 청산사례의 회소성	134
2. 청산에 대한 법률 기초상식 결여	134
3. 청산절차의 복잡성과 지방정부의 행정편의주의	135
4. 청산절차 진행으로 야기될 잠재적 비용에 대한 불안감	135
5. 투자계획 수립 시 출구전략에 대한 인식이 없음	136
6. 임대계약 중도해지와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	136
7. 투자자 및 현지법인 책임자의 자포자기	136
[부록] 중국에서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한 주요 법규	138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해산 및 청산관련 법률조항	138
2.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청산 관련 조항	143
3.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 청산 관련 조항	146
4. <중외합작기업법 실시세칙> 청산 관련 조항	149
5. 외상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업무 진행 관련 상무부 판공청의 지도의견	150
6. 공상국, 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 해산으로 인한 등기말소 관리 유관문제에 대한 통지	153
7.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 약간 문제 적용 관련 규정	160
8. 외국자본의 비정상적 철수와 관련한 다국적 추궁 및 소송 관련 통지	172

제 1 장 중국 청산 관련법률의 변화와 특징

90 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은 지난 20 여 년 남짓한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0 년 대 중반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이로 인한 경기 불황 및 중국 정부의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한 우대혜택 폐지 및 축소 등의 외부적 환경요인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 내부의 요인이 동시에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많은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회사 청산의 개념, 법률환경 및 실무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지 못해 해당 기업의 주주, 경영자를 비롯한 노동자와 관련 채권채무자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산의 개념과 회사의 상황에 따른 청산방법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청산 실무절차를 안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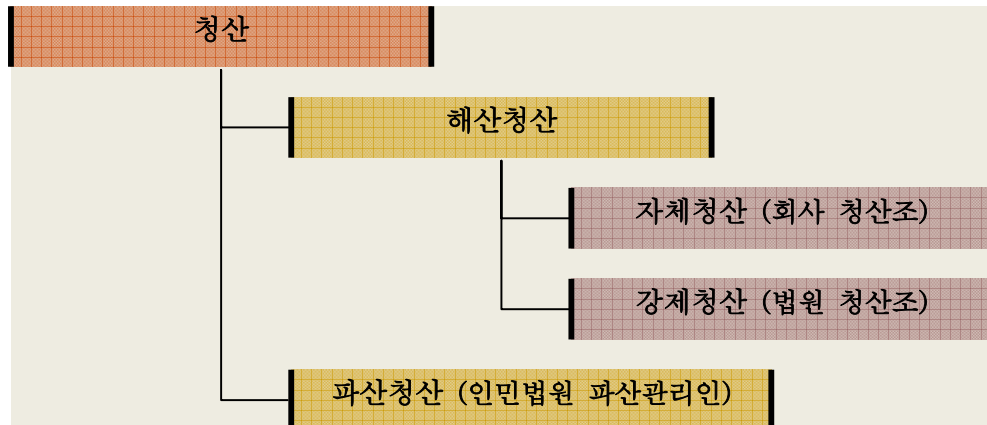
제 1 절 청산의 개념

청산이란 회사를 종지해야 하는 상황(회사의 해산 또는 파산)에 직면하여 청산의무가 있는 주체가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을 전면적으로 정리 및 처리하고 회사와 기타 다른 경제주체간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켜 최종적으로 회사의 법인자격을 말소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산’과 ‘청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산은 회사의 영업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법인자격과 채권채무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청산은 회사가 해산된 후에 재산과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여 법인자격을 말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을 결의하여 해산하고, 이후에 청산업무를 진행하여 법인자격을 소멸시키고, 자산과 채권채무 등을 처리하며, 투자자 및 법인대표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게 된다.

청산은 앞서 언급한 회사의 종지상황에 따라 다시 ‘해산청산’과 ‘파산청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파산청산이란 청산시점에서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 인민법원의 파산 선고와 파산관리인의 지정을 통해 회사가 청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산청산이란 청산시점에서 재산이 부채보다 많고 회사를 우선 해산한 후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

산조의 구성주체에 따라 ‘자체청산’과 ‘강제청산’으로 구분된다. 자체청산이란 회사가 스스로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제청산이란 인민법원이 청산조를 지정하여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절 청산 관련 법률의 역사와 현행 법률체계

1. 청산 관련 법률의 변화 역사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중요한 법률의 변화는 1996 년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이하 “청산방법”)의 제정과 2008 년 1 월의 폐지, 2007 년 <기업파산법>의 제정 시행이다.

1996 년 <청산방법> 제정 이전까지 외상투자기업은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이하 “합작기업법 실시조례”)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이하 “합작기업법 실시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청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청산을 진행하였으나, 이들 법률문건에는 청산 실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부족하여 실무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1996 년 <청산방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지침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 년 개정 시행된 <회사법>과 <청산방법>에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있고, 중국 로컬기업은 <회사법>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은 <청산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청산을 진행하는 이중체계의 중단을 위해 중국 정부가 <청산방법>을 2008 년 1 월 15 일 폐지하게 된다. <청산방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중국 로컬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이 모두 원칙적으로 <회사법>에 근거하여 청산을 진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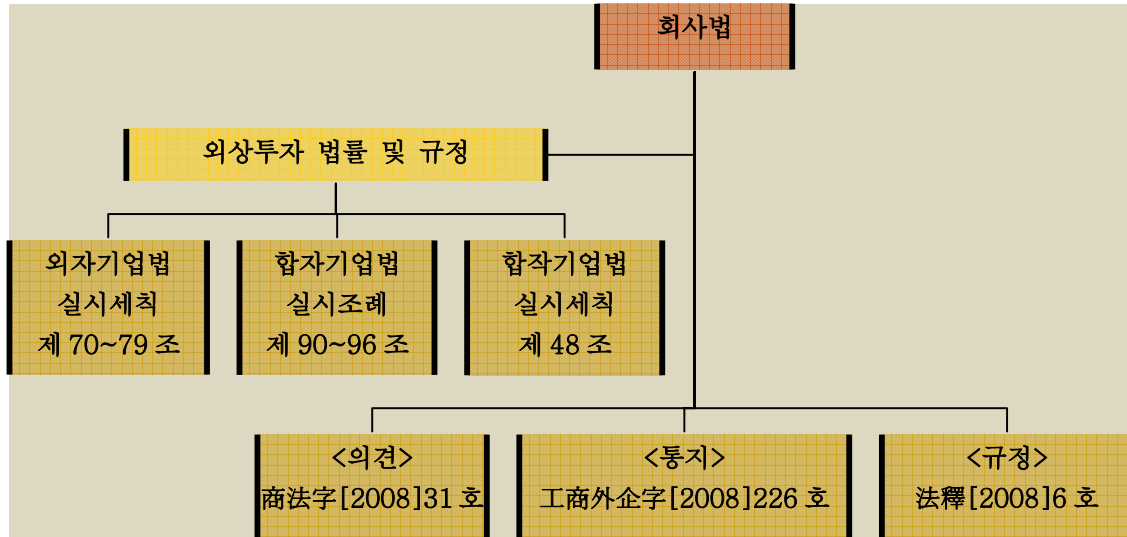
그리고, 파산에 처한 외상투자기업이 청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률문건은 계속하여 제정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07 년 6 월 1 일 <기업파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기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중국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파산법>(시행)이 이전에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유기업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 19 장 기업법인파산청산절차의 유관 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파산청산과 관련한 상세한 기준법률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파산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비로소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국유기업에게 적용되는 파산청산 관련 기준법률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법률명칭	발표시기	개정시행시기	현재유효여부
해산 청산	회사법	1993.12.29 발표 1994. 7. 1 시행	2005.10.27 발표 2006. 1.1 시행	유효
	청산방법	1996. 7. 9 발표시행		폐지 (2008.1.15)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1990.12.12 발표시행	2001. 4.12 발표시행	유효
	합자기업법 실시조례	1983. 9.20 발표시행	2001. 7.22 발표시행	유효
	합작기업법 실시세칙	1995. 9. 4 발표시행		유효
파산 청산	기업파산법(시행)	1986.12. 2 발표		폐지 (2007. 6. 1)
	기업파산법	2006. 8. 27 발표 2007. 6. 1. 시행		유효

2. 현행 법률 및 체계

중국 국무원이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준거법 역할을 하였던 <청산 방법>을 폐지한 후 이에 따른 행정상 혼란과 법률 공백 방지를 위하여 상무부와 공상 행정관리국은 2008년 5월 5일과 같은 해 10월 20일 각각 <법에 의거하여 외상투자 기업 해산 및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商法字[2008]31 호, 이하 “의견”)과 <외상투자기업 해산 등기말소 관리와 관련된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工商外企字[2008]226 호, 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의견>과 <통지>에 따른 외상투자기업 청산업무의 적용법률은 <회사법>, <공사등기관례조례> 및 외상투자 법률과 행정법규의 유관 규정이며,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실무 관련 사항을 <의견>과 <통지>에 정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한 청산과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중화 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2)>(法釋[2008]6 호, 이하 “규정”)을 발표하여 <회사법>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청산이 소송 또는 중재와 관계되는 경우의 법률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유관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현재 중국 경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체계는 다음과 같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파산 상황에 처한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는 2007 년 6 월 1 일 시행된 <기업파산법>에 근거하여 파산청산을 진행하게 된다.

3. 현행 법률 체계에 따른 적용법률 충돌문제와 해결방법

준거법인 <회사법>과 <외자기업 실시세칙>과 같은 외상투자 법률 및 행정법규의 유관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정부당국에서 “통지” 등의 형식으로 발표한 문건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유관 문건에 충돌되는 사항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 있다면 그를 따르면 된다.

원래,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회사법>보다는 특별법인 외상투자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올바른 해석방법이다. 그러나, 중국의 일선 행정창구에서는 사실상 법률 제정시기가 최근이었던 <회사법> 또는 최근 시점에 발표되는 “통지” 등의 일반 법률문건을 우선 적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리해석 측면보다는 실무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일선 행정창구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청산조 설치시기에 대한 법률규정 충돌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은 중지일 즉, 심의비준 기관으로부터 회사 중지에 관한 기준을

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 및 대외 공고하고,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청산조 인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법>과 <의견>에서는 심의비준 기관으로부터 해산 비준을 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외자기업법 실시세칙>과 <회사법>이 정한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반법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인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으나, 중국 일선 행정창구에서는 <회사법>과 <의견>의 규정을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견> 제 1 항¹은 외상투자 법률 및 행정법규에 명시된 특별 규정이 있고 <회사법>에 없는 경우에 특별규정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중국 일선 행정창구에서의 <회사법> 우선 적용 관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¹ <의견> 제 1 항: 이후 외상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업무는 반드시 회사법과 외상투자 법률 및 행정법규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외상투자 법률과 행정법규에 유관 특별 규정이 있으나 회사법에 상세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절 舊法 <청산방법>과 新法 <회사법>의 비교

폐지된 <청산방법>과 현재 유효한 <회사법>에 의한 청산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산방법>에서 정한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청산방법>과 달리 <회사법>에는 청산과 관련한 기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셋째, <회사법>에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해산청구를 통해 사법해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의 구분 제거

<청산방법>에서 정한 청산방법은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이었다. 보통청산이란 외상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청산으로 회사가 청산조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으로 청산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여 스스로 청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심의비준기관에 회사 최고 의결기구, 주주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여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술한 청산방법의 구분은 <회사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법>은 법률개념으로 문건에서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회사가 스스로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하는 자체청산과 인민법원이 청산조를 지정하여 청산을 진행하는 강제청산의 방식이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84 조는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외상투자기업의 청산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구분	舊 <청산방법>	現 <회사법>
자체적인 청산	보통청산	자체청산
외부기구에 의한 청산	특별청산(심의비준기관)	강제청산(인민법원)

2. 청산기간의 제거

<청산방법> 제 6 조는 청산개시일로부터 심의비준 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

지가 청산기간이고, 이 기간이 180 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여 청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90 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상투자기업은 최장 270 일 이내에 청산을 완료한 후 심의비준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청산개시 이후 채권채무 정리, 세무/외환/세관 등 관련 사항 정리 및 노무관련 사항 정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청산방법>이 정한 청산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반해, <회사법>은 청산기한에 대한 성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회사는 실제 청산업무 진행경과에 따라 청산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를 보고하면 된다.

3. 사법해산 방식의 신설

<청산방법>에는 인민법원에 의한 사법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회사법>은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속하여도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 표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인민법원에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주주는 인민법원에 해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이를 수리하여 해산판결을 하는 경우 바로 사법해산에 의한 청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 2 장 청산의 기본절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상투자기업은 청산시점에서의 재산 및 부채 규모에 따라 해산청산 또는 파산청산을 진행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해산청산과 관련하여 청산 사유, 방법, 실무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해산 사유와 청산방법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회사의 해산을 확정하고 청산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해산 사유는 외상투자기업의 유형 - 외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구체적인 해산 사유는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회사의 해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청산업무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의 청산방법은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청산조의 구성 주체에 따라 ‘자체 청산’과 ‘강제 청산’으로 구분된다.

1. 자체 청산

자체청산이란 회사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라 스스로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의결기구’란 <정관>에 약정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의미하며 주주 또는 주주총회 또는 동사회가 이에 해당한다. 회사 스스로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2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최고의결기구에서 사전해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전 해산에 대한 심의비준기관의 비준을 취득한 후 청산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해산 사유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한다.

회사유형	해산사유
외자기업	(1)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2)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외합자기업	(1) 중대한 결손이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투자자 일방이 회사의 협의, 계약,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계속 경영할 수 없는 경우 (4) 경영목적 미달성하고, 동시에 발전 전망이 없는 경우 (5) 계약 및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외합작기업	(1)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투자자 일방 또는 다방이 회사 계약,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 정관에서 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둘째, 상술한 표에서 명시한 중외합작기업 해산 사유 (3)과 중외합작기업 해산 사유 (2)의 상황에서 투자자 일방이 사전해산에 대한 제소 또는 중재신청을 하거나 <회사법> 제 183조²에 의거하여 표결권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사전 해산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자체적으로 청산조를 구성한 경우에는 심의비준기관의 비준을 취득하여 청산을 진행하게 된다.

셋째,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한 만료로 인한 해산, 사법 판결에 의한 해산, <기업법인 영업집조> 말소/ 폐쇄명령 또는 취소로 인한 해산하고 청산조를 회사 자체에서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전 해산에 관한 심의비준 기관의 비준을 득하지 않고 직접 청산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² <회사법> 제 183 조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계속 존속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전체 주주 표결권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인민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2. 강제 청산

강제청산이란 기업이 해산된 후 주주가 청산을 하지 않거나 위법청산을 하는 경우 기업의 10% 이상 표결권을 보유한 주주 또는 채권인이 인민법원에 청산신청을 하고, 인민법원이 청산조를 지정하여 진행하는 청산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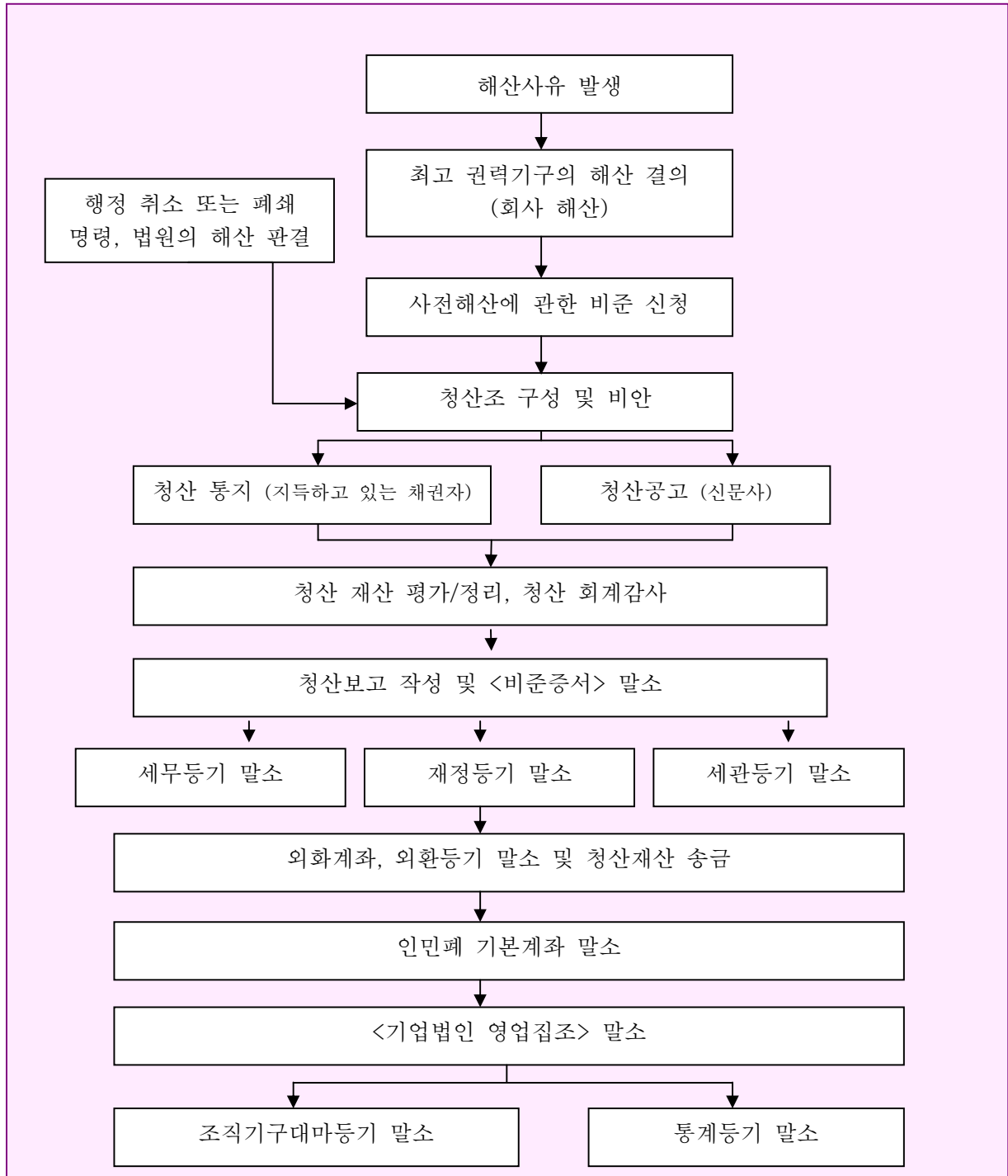
<회사법> 제 184 조는 회사의 해산 사유 출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 자체 청산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규정> 제 7 조³에 의거하여 회사가 청산조를 구성하지 않거나, 청산조가 고의적으로 청산을 지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채권인 또는 주주가 인민법원에 청산신청을 하고, 인민법원이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게 된다.

³ <규정> 제 7 조: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채권인이 인민법원에 청산조 지정과 청산 진행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 (1) 회사 해산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청산조를 설치하여 청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 (2) 청산조가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 (3) 불법청산으로 채권인 또는 주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본 조 제 2 항에서 열거한 상황이 갖추어졌으나 채권자가 청산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회사 주주가 인민법원에 청산팀 지정과 회사에 대한 청산 진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 2 절 청산절차



1. 해산사유 발생

제 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각한 경영손실로 인한 해산결정,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인한 경영불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등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사례]

심양시 한 개발구에 100% 한국인 자본으로 사료제조회사로 설립된 외상독자기업 “A”사는 경영활동을 제대로 전개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A”사의 법정대표인 한국인 “s”사장은 ‘이 회사를 접어야 하는가? 내가 결정만 내리면 회사를 접을 수는 있는 건가? 회사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고민에 처하게 된다.

[분석]

“A”사는 중국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회사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중국의 <회사법>, <외자기업법>, 그리고 “A”사의 정관에서 찾을 수 있다. ‘A’사의 경우에는 정관과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에서 정한 “경영부실 및 심각한 손실로 인한 투자자의 해산결정”에 해당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2. 청산준비

(1) 최고결기구의 해산 의결

가. 최고결기구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최고 결기구를 통하여 회사의 사전해산과 청산진행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물로 ‘회사의 사전해산에 관한 의결’문건을 작성하게 된다. 최고 결기구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주주, 주주총회, 동사회가 최고 결기구이다.

구분	최고결기구	비고
외자기업	주주 또는 주주총회, 또는 동사회	<정관> 규정에 따라 확정
중외합자기업	동사회	
중외합작기업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정관> 규정에 따라 확정

나. 의결정족수

회사의 사전해산을 위한 의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준수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회사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에 명확한 의결 관련 조항이 없다. 이에 <회사법>⁴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2/3 이상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의 동의를 거쳐 회사의 해산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러한 요건보다 강화된 의결원칙을 명시하였다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⁴ <회사법> 제 44 조 주주회의가 회사 정관 수정, 등록자본금 증가 또는 감소, 회사의 합병/분리/해산 또는 회사 형식의 변경 의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2/3 이상 표결권을 보유한 주주의 동의로 통과해야 한다.

중외합자기업의 경우에는 <합자기업법 실시조례> 제 33 조⁵에 의거하여 동사회 회의에 출석한 동사의 만장일치 의결로 결의하여야 한다. 또한 동사회 회의는 2/3 이상의 동사가 출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서 동사회 회의의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상기 법률요건보다 강화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 규정내용을 따라야 한다.

중외합작기업의 경우에는 <합작기업법 실시세칙> 제 29 조⁶에 의거하여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동사 또는 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의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합작기업법 실시세칙> 제 28 조에 의거하여,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동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다. 중외합자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정관>에서 동사회 회의의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상기 법률요건보다 강화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 규정내용을 따라야 한다.

구분	출석정족수	의결정족수	비고
외자기업		2/3 이상 표결권 가진 주주 동의	법률요건보다 <정관> 규정 우선 준수.
중외합자기업	2/3 이상	출석자 만장일치	
중외합작기업	2/3 이상	출석자 만장일치	

[사례]

단일 주주가 투자하여 설립하고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외자기업 A 사의 <정관>에는 최고 의결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집행동사가 법정대표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주주 총회나 동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A 사는 장기간 누적된 결손으로 인한 경영부실과 사업전망 불량을 사유로 해산을 결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 해산을 결의하는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분석]

외자기업인 A 사는 단일 주주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회사 내에 동사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경우 <회사법>에 의거하여 2/3 이상 표결권을 가진 주주, 즉 A 사의 단일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결의하면 된다.

⁵ <합자기업법 실시조례> 제 33 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항은 동사회 회의에 출석한 동사의 만장일치 의결로 통과되어야 비로소 의결할 수 있다. (2) 합영기업의 중지와 해산.

⁶ <합작기업법 실시세칙> 제 29 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항은 동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동사 또는 위원의 만장일치 의결로 통과되어야 비로소 의결할 수 있다. (3) 합작기업의 해산.

다. 의결문건의 작성

최고 의결기구를 통해 회사의 해산이 결의되면 이를 중문 문서로 작성하여 의결에 찬성한 주체의 서명날인을 진행한다. 회사 청산 실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해산 결의문건이 최소 5부 이상 행정당국에 제출되므로 약 6부 정도의 의결문건을 작성하여 원본으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결문건은 해당 지역의 심의비준 기관과 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양식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행정당국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특히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 국의 양식과 다르게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해산 관련 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의결문건 서식

①외자기업용 서식

****무역(항주)유한공사 주주 결의서**
——회사 사전 종지에 동의하는 것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과 그 실시세칙 및 **무역(항주)유한공사 (이하,“본 회사”)《정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 (주)***** (이하,“주주”)는 2009 년 11 월 3 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며, 본 주주는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 단독으로 본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 정관 제 42 조가 규정한 사전종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본 출자자는 회사의 사전종지에 동의하는 바이다. 본 회사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고, 누적손실이 심각하여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바, 이에 부득이하게 본 회사의 사전 종지를 결정하는 바이다.
2. 본 회사는 사전 종지를 결정한 날로부터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
3. 본 회사는 《회사법》, 《외자기업법》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청산과 관련한 필요 비준, 등기취소 등 행정수속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인투자자 : (주)***** (날인)

법정대표인 : *** (서명)

일자 : 2009 년 월 일

****贸易（杭州）有限公司股东的决定**

——关于同意公司提前终止的决定

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及其实施细则及**贸易（杭州）有限公司（以下简称“本公司”）《章程》的有关条款规定，韩国**株式会社（以下简称“股东”）于 2009 年 11 月 3 日作出如下决议：该股东为本公司的唯一股东，单独持有 100%的本公司股权。

- 1、因章程第四十二条规定的提前终止事由出现，股东同意公司提前终止。本公司由于经营不善及严重的累积损失而无力继续经营，因此不得已决定提前终止本公司。
- 2、本公司自作出提前终止决定之日起不开展与清算无关的经营活动。
- 3、本公司应按照《公司法》、《外资企业法》和有关法律法规的规定，严格进行有关清算的所需批准、登记注销等的行政手续。

法人股东：*** 株式会社 （盖章）

法定代表人：****

签字_____

日期：2009 年 月 日

②중외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용 서식

북경****광고유한공사 동사회 결의

시간 : 2009 년 월 일

장소 : 북경****광고유한공사 회의실

소집 및 주최인: 동사장 ***

전체 및 출석 동사인원수 : 3 명 (** 동사장, ** 동사, ** 동사)

회사 경영현황과 정관 규정에 의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중외합자기업경영법>과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사는 2009 년 월 일 동사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사 경영을 사전에 중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1. 회사 및 투자자의 경제손실을 감소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전중지를 결정한다. 또한 중국의 유관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기존 비준기관과 등기기관에 사전 중지 신청을 제출하고 회사 청산업무를 엄격하게 진행한다.

2. 유관 법률규정에 근거하고 보통 청산 절차를 따른다. <중외합자경영>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동사회가 청산조를 임명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3. 청산조는 청산업무인원을 초빙하여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동의한다. 청산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인감 및 모든 자료를 청산조 또는 청산조가 지정하는 청산업무인원에게 이관한다. 청산조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업무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이를 적절하게 잘 보관하고 처리해야 한다.

회사 전체 동사가 동사회 회의에 출석하였으며 친필로 본 서면 결의에 서명하여 이를 증명한다.

동사장 : *** _____

동사 : *** _____

동사 : *** _____

北京****广告有限公司 董事会决议

时间：2009 年 月 日

地点：北京****广告有限公司的会议室

召开并主持人：董事长 ***

全体以及出席董事人数：3 名（*** 董事长、*** 董事、*** 董事）

根据公司经营情况及章程的规定，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及《中外合资企业经营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本公司在于 2009 年 月 日召开董事会会议，会议就提前终止公司经营的事宜一致表决通过如下事项：

1. 为了减少公司和投资者的经济损失，决定公司的提前终止。并且按照中国有关法律规定，向公司原批准机关及登记机关提出提前终止申请，严格进行公司的清算事宜。
2. 根据有关法律规定，按照普通清算程序。根据《中外合资合同》和章程的规定，公司的董事会任命清算委员会进行清算。
3. 同意清算委员会聘请清算工作人员办理具体事务。从清算开始之日，公司的公章及所有材料移交清算委员会或者其委员会指定的清算工作人员，由清算委员会或其委员会指定的工作人员应妥善保管并依法处理。

公司全体董事出席董事会会议并亲笔签署本书面决议，以资证明。

董事长：*** _____

董事：*** _____

董事：*** _____

(2) 인민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산

가. 인민법원의 안건 수리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 표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법이 정한 요건⁷을 갖추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안건을 수리하여 해산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주주가 해산 소송 신청하는 시점에서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주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보전을 허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해산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문서를 기초로 청산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사례]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북경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외합자기업으로 광고회사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어떠한 사업도 전개하지 못하였고 납입된 자본금을 이미 모두 소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외합자기업의 존속은 주주에게 경제적 손실만 추가할 뿐이라는 판단하에 중국기업에게 사전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중국기업이 이를 거부하였다.

[분석]

중외합자/합작기업은 회사정리가 동사회 만장일치 결의사항이므로 한국측 투자자의 해산의지만으로는 청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청산을 강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민법원 제소하여 판결 또는 재결문건을 받은 후 해당 문서를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절차임이 분명하다.

⁷ <규정> 제 1 조: 단독 또는 공동으로 회사 전체 주주 표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유 중 하나로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회사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 (1) 회사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2) 주주 표결시점에서 법정 또는 정관이 정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유효한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3) 회사 동사가 장기간 충돌하고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4) 기타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회사의 계속 존속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해산 소송을 제기하는 관할법원은 회사 주소지 즉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 인민법원이다. 회사 사무기구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지역 인민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구분	소송 수리 범위
基層 인민법원	관할 縣, 縣級市 및 區의 등기기관이 회사 등기를 비준한 경우
中級 인민법원	地區, 地級市 이상의 등기기관이 회사 등기를 비준한 경우

나. 인민법원의 안건 불수리 조건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주의 해산안건에 관한 소를 수리하지 않는다.

- ① 다음을 사유로 해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주주 알권리 및 이윤분배 청구권 등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우
 - 결손 및 재산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전체 상환할 수 없는 경우
 -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말소당하고 청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 ② 해산소송과 청산진행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청산진행 신청을 수리하지 않음
- ③ 주주가 회사와 함께 다른 주주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고, 인민법원의 다른 주주를 제 3자로 변경하라는 고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⁸
- ④ 인민법원이 해산 소송 청구를 기각한 후 해당 주주 또는 기타 주주가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회사의 해산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다. 인민법원의 조정진행

인민법원은 해산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주주의 지분 매수 또는 감자 등 방법으로 회사 존속에 동의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이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정한 강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이를 지지하게 된다. 회사의 주주 지분 매수는 조정문건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분양도 또는 말소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회사의 지분매수를 이유로 회사

⁸ <규정> 제 4 조에 의거하여 주주가 회사의 해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반드시 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해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타 주주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는 인민법원이 이를 통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기타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가 공동 원고 또는 제 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채권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상술한 조정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해산 소송에 대한 판결을 진행한다.

라. 인민법원 판결의 효력

인민법원의 회사 해산에 관한 판결은 회사 전체 주주에 대하여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해산 판결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해산 판결의 효력이 개시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3) 기타 해산사유에 따른 청산준비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최고의결기구의 해산결의나 인민법원의 해산판결 아닌 다른 해산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폐쇄를 명한 경우,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말소 당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 당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술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폐쇄 또는 말소 또는 취소 관련 결정문건 등을 구비하고 청산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3. 해산에 관한 비준신청

(1) 해산 신청기관, 준비서류, 소요기간

최고의결기구를 통한 해산 결의가 있거나 기타 다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설립을 심의비준한 상무부문에 해산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상무국”,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외경무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회사 설립 당시 설립 신청을 제출하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이 신청을 수리하게 된다. 신청 수리기관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와 내용이 다소 상이하므로 해산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리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관	회사 설립을 심의 비준한 상무부문
신청서류	1. 신청서 2. 최고의결기구의 사전해산 의결문건 3. 동사회 구성원 명단 (해당인원 서명필요) 4. 청산조 구성원 명단 (해당인원 서명필요) ⁹ 5. 회사 <계약>, <정관> 및 모든 수정문건 6. 모든 驗資報告 (‘주금납입증명서’와 유사) 7. 최신 회계감사보고서 8. 해당 연도 1 월부터 ~ 전월까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9.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정본 및 부분 (원본 및 사본) 10. <기업법인 영업집조> 정본 및 부분 (사본)
진행절차	신청 → 수리 → 심사(區 단일 또는 區와 市 단계별 진행) → 회답문건 발급
소요기간	약 5 일 업무일 (상무부 통지에 의한 기간은 10 일 업무일 ¹⁰)
처리 결과물	기업 사전 해산 신청에 관한 회답문건

⁹ 청산조는 해산에 관한 비준을 취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산 신청 시점에서 청산조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¹⁰ <의견> 제 2 항: 심의비준 기관은 해산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수신한 후 10 일 업무일 이내에 기업 해산을 비준하는 회답문건을 작성하고 전국 외상투자기업 심의비준 관리시스템에 기업 해산 비준 정보를 추가한다. 기업은 해산 비준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조를 성립하여 법에 따라 청산을 개시해야 한다.

(2) 신청문서 양식

****무역(항주)유한공사의 사전종지에 관한 신청서**

무역(항주)유한공사 (이하, “본 회사”) 는 한국법인 (주)**가 200*년 월 일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하였다. 본 회사의 법정대표는 *** 선생으로서, 법정주소는 항주시 **구 **진 **로 *호이고, 등록자본금은 100 만 달러이며(실제 불입된 자본금은 80 만 달러이며, 불입되지 않은 자본금의 출자기한은 아직 만기되지 않은 상태), 경영범위는 의류, 옷감, 장신구의 도매 및 수입업무이고, 경영기간은 20 년 (200*년 *월 **일- 202*년 *월 **일) 이다.

현재 본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손실 누적이 심각함에 따라 경영을 지속할 수 없어 주주의 동의를 거쳐, 본 회사의 경영 사전 종지를 결정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본 회사와 주주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과 그 실시세칙 및 《회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히 귀 국에 사전 해산신청을 제출하는 바이다.

본 회사는 중국 관련 법률에 따라 해산업무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것임을 보장하는 바이며, 본 회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법률 소송, 중재 및 그와 비슷한 법률쟁의사항이 없음을 맹세한다.

이에 회답하여 주길 바란다.

****무역(항주)유한공사 (날인)**

법정대표 : ***

(서명) _____

2009 년 월 일

关于提前终止**贸易（杭州）有限公司的申请

贸易（杭州）有限公司（以下简称“本公司”）是由韩国法人株式会社单独投资设立，成立于 200*年 *月 **日的一家外商独资企业。本公司的法定代表人为***先生，法定地址为杭州市**区**镇**路 8 号，注册资本为 100 万美元（实缴资本为 80 万美元。未到位注册资本的出资期限尚未到期），经营范围为服装、面料、饰品的批发及进口业务，经营期间为 20 年（200*年 *月**日 - 202*年 *月**日）。

现因本公司经营不善及严重累积损失而无力继续经营，经股东同意，决定提前终止本公司经营。因次，为了减少本公司及股东的经济损失，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其实施细则及《公司法》等有关规定特向贵局提出提前解算申请。

本公司保证将按照中国有关法律严格彻底进行解算。并且，本公司承诺至今没有任何法律诉讼、仲裁及其类似的法律争议事项。

望批复。

**贸易（杭州）有限公司（盖章）

法定代表：***

（签字）_____

2009 年 月 日

4. 청산조 구성 및 비안

(1) 청산조 구성 및 역할

가. 청산조 설치 시기

해산에 관한 비준을 득하거나 인민법원의 해산 결정 판결을 받는 등 해산이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를 설치하고, 청산조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 구성원과 책임자를 회사 등기기관에 비안해야 한다.

나. 청산조 구성인원

① 자체청산인 경우의 청산조 구성

청산조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유형에 따라 청산조의 구성인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제한이 있다.

구분	구성인원 자격
<회사법> 제 184 조	유한책임회사 - 주주로 구성. 주식유한회사 - 동사 또는 주주총회에서确定的한 인원.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 74 조	법정대표, 채권자 대표, 유관 기관의 대표로 구성. 중국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등의 참여가 가능.
<합자기업법 실시조례> 제 92 조	원칙적으로 동사 중에서 선임. 중국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초빙. (If need)심의비준기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여 감독 가능.
<합작기업법 실시세칙>	관련 조항 없음.

위와 같은 구성인원의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산조 비안등기를 할 때에는 상기 자격 구비자 이외의 컨설팅 회사나 기타 다른 인원을 청산조 구성원으로 선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해에 소재하는 A사의 경우에는 법정대표와 컨설팅 회사의 전문가 2명으로 청산조를 구성하여 공상국에 비안하고 청산업무를 완료하였다.

② 강제해산에 의한 청산조 구성

<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채권자 또는 주주가 인민법원에 청산조 구성과 청산 진행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청산안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관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조를 구성해야 하며, 청산조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 또는 기구에서 선정할 수 있다.

- 회사 주주,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 중개기구
- 상술한 중개기구 중 유관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종업종사자격을 취득한 인원

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 청산위원회 구성원과 관련하여 채권자 및 주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인민법원이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¹¹

다.청산조 역할

청산조는 기본적으로 채권자회의 소집,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 작성, 각종 세금납부, 청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각 유관 법률이 정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역할
<회사법> 제 185 조	1. 회사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2. 채권인 통지 및 공고 3. 청산 관련 미완료 업무의 처리 4. 체납세금 및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납부 5. 채권채무 정리 6. 채무 상환 이후의 잔여 재산 처리 7. 회사 대표 민사소송 활동에 참여

¹¹ <규정> 제 9 조: 인민법원이 지정한 청산조 구성원이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인 및 주주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에 의거하여 청산조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종업종사능력이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회사 또는 채권인의 이익을 엄중하게 손상시킨 행위가 있는 경우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 75 조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 재산 인수 및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제정 5. 채권회수 및 채무상황 6. 주주의 미납대금 추정 7. 잔여재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및 응소
<합자기업법 실시조례> 제 93 조	1. 재산/채권/채무 전면 조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 작성 2.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3. 청산방안 제정, 동사회 보고/ 승인 /집행 4. 회사 대표하여 제소 및 응소

(2) 청산조 비안

가. 신청기관, 구비서류, 절차

청산조 성립일로부터 10 일 내에 청산조 구성원 및 책임자 명단을 비안한다.

청산개시 신청기관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
신청서류	1. <외상투자기업 등기비안(변경) 신청서> (지정양식 확인) 2. 영업집조 정본 및 부분 (원본과 사본) 3. 최고결기구의 청산조 구성에 관한 결의문건 4. 청산조 구성원 명단 5. 기업 사전 해산 신청에 관한 회답문건 6. 법률문건송달위탁서
진행절차	신청 → 수리 → 비안 확인문건 발급
소요기간	당일
처리 결과물	비안 허가 통지서

나.신청문서 양식¹²

① <외상투자기업 변경(비안)등기 신청서>

외상투자기업 변경(비안) 등기신청서 _____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등기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_____, 등 사항의 변경(비안) 등기를 신청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 시에 제출하는 문건과 유관 부속자료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하다는 사 실과 허위문서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법률책임을 진다는 승낙을 합니다. 기업명칭 _____ 등록번호 _____ 법정대표 서명 _____ (기업 인감) 년 월 일 항주시 공상행정관리총국 제작 HTTP://WWW.HZAIC.GOV.CN

¹² 지역별로 해당 공상행정관리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의 양식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본 양식은 참고로 활용하고 반드시 비안 이전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하는 사항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대표 지정 또는 위탁 대리인 증명

_____을 지정/위탁하여 당사의 변경(비안) 등기 사항을 처리한다.

지정/위탁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탁인 _____

년 월 일

비고 : 위탁인은 법정대표인이다.

대표 지정 또는 위탁 대리인 정보

성명		신분증 사본 붙이는 곳
단위		
부문		
연락전화		

집조 수령 목록

비고: 집조수령인은 반드시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인이어야 한다.

등록번호		핵준일시		인쇄자	
영업집조 일련번호	정본 : 부분 1 : 부분 2 :				
납부금액		납부영수증번호			
집조수령인	서명				
	일시				
	증서 명칭				
	증서 번호				
집조발급인	서명				
	일시				
비고					

당안귀속현황

송달인	
접수인	
송달시기	
비고	

외상투자기업 기타 비안사항

기업명칭				등록번호		
지분권 지당		저당제공 주주 명칭/성명				
		질권인 명칭/ 성명			질권인 유형	
		질권기간				
		점유비율			비준기관	
청산조 구성원						
청산조 책임자				통신주소		
				연락전화		
분공사	증설비안	명칭			등록번호	
		등기기관			등기일시	
	말소비안	명칭			등록번호	
		등기기관			등기일시	
	변경비안	명칭			등록번호	
		등기기관			등기일시	
정관수정내용						
해외 주주 발기인의 법률문건송달접수인	명칭	상세주소	연락담당	연락전화	이메일	
공상등기 연락인	성명	연락주소	연락전화	이메일	부문	
			유선			
			이동			

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登记申请书

_____工商行政管理（总）局：

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等有关规定，现申请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等事项变更（备案）登记，请予核准。同时承诺：所提交的文件和有关附件真实、合法、有效，复印文本与原件一致，并对因提交虚假文件所引发的后果承担法律责任。

企业名称 _____

注册 号 _____

法定代表人签字 _____

（企业印章）
年 月 日

杭州市工商行政管理局制
HTTP://WWW.HZAIC.GOV.CN

指定代表或委托代理人的证明

兹指定/委托_____办理本公司变更（备案）登记事宜。

指定/委托的有效期限：自 年 月 日到 年 月 日。

委托人_____

年 月 日

注：委托人为法定代表人。

指定代表或委托代理人信息

姓 名		身份证明复印件粘贴处
单 位		
部 门		
联系电话		

领 照 清 单

注：领照人应为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

注 册 号		核准日期		打印人	
营业执照编号	正本： 副本 1： 副本 2：				
缴费数额			缴费收据号		
领 照 人	签 字				
	日 期				
	证件名称				
	证件号码				
发 照 人	签 字				
	日 期				
备 注					

归 档 情 况

送 档 人	
接 档 人	
送档日期	
备 注	

外商投资企业其他备案事项

企业名称				注册号		
股权质押		出质股东 名称/姓名				
		质权人 名称/姓名		质权人 类别		
		质押期限				
		所占比例			审批 机关	
清算组成员						
清算组负责人				通信地址		
				联系电话		
分 公 司	增 设 备 案	名称			注册号	
		登记机关			登记日期	
	注 销 备 案	名称			注册号	
		登记机关			登记日期	
	变 更 备 案	名称			注册号	
		登记机关			登记日期	
章程 修正 内容						
境外 股东 发起 人的 境内 法律 文件 送达 接受 人	名 称	详细地址	联 系 人		联系电话	电子邮箱
工商 登记 联络 员	姓 名	联系地址	联系电话		电子邮箱	部 门
			固定			
			移动			

② 청산조 구성에 관한 결의문건

**무역(항주)유한공사 주주 결의서 ——청산조 결성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과 그 실시세칙 및 **무역(항주)유한공사 (이하,“본 회사”) 《정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회사는 법에 따라 경영을 사전 중지하고, 한국(주)*** (이하,“본 출자자”)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바이다.

1. 회사는 청산팀을 *** 선생, *** 선생, *** 선생으로 구성하고, 그 중 *** 선생이 팀장을 담임한다.

성명	성별	국적	직무	신분증 명칭 및 번호
			위원장	여권 *****
			위원	여권 *****
			위원	신분증 *****

2. 청산팀 결성 후 《회사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고 직책을 이행한다.

3. 출자자는 청산팀이 청산업무 인원을 초빙하여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청산개시일부터 회사의 인감 및 모든 자료는 청산팀에게 이관되며, 청산팀은 법에 따라 합당하게 보관하고 처리한다.

투자자 : (주)**** (날인)

법정대표인 : ***

(서명)

일자 : 2009 년 10 월 30 일

****贸易（杭州）有限公司股东的决定**

——关于成立清算组的决定

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及其实施细则及**贸易（杭州）有限公司（以下简称“本公司”）《章程》的有关条款规定，本公司依法提前终止，韩国**株式会社（以下简称“股东”）作出如下决定：

1、本公司成立清算组，其成员由***先生、***先生、***先生组成，其中由***先生担任组长。

名字	性别	国籍	职务	证件名称及号码
			清算组长	护照 *****
			组员	护照 *****
			组员	身份证 *****

2、清算组成立后应按《公司法》的要求开展工作，履行职责。

3、股东同意清算组聘请清算工作人员办理具体事务。从清算开始之日，本公司的公章及所有材料移交清算组，由清算组妥善保管依法处理。

法人股东：**株式会社（盖章）

法定代表人：***

签字 _____

日期：2009 年 月 日

③ 청산조 명단

****무역 (항주) 유한공사 청산팀 구성원 명단**

성명	국적	신분증 종류	신분증 번호	청산팀 직무	서명
		여권		위원장	
		여권		위원	
		신분증		위원	

****贸易（杭州）有限公司 清算组成员名单**

姓名	国籍	身份证明 种类	身份证号码	清算组 职务	签字
		护照		组长	
		护照		组员	
		身份证		组员	

④ 법률문건 송달 수권위임서

법률문건 송달 수권위임서

***에게 중국 경내에서 당사의 법률문건 송달 접수인으로서 권한을 위임하며, 당사를 대리하여 중국 경내의 법률문건과 기타 문건을 접수한다.

피수권자 명칭(성명):

피수권자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증서명칭 :

증서번호 :

수권자 (외국투자자) 서명 및 날인 :

피수권자 (경내법률문건 송달접수인) 서명 및 날인 :

일시 : 200 년 월 일

비고: 피수권자는 외국투자자가 경내에 설립한 분지기구, 설립예정 분공사(피수권자가 설립예정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후에 위임 효력 발생) 또는 기타 경내의 유관 단위 및 개인일 수 있다.

法律文件送达授权委托书

现授权***为我方在中国境内的法律文件送达接受人，代为接受我方在中国境内的法律
文书及其他文件。

被授权人名称（姓名）：

被 授 权 人 地 址：

邮 编：

联 系 电 话：

证件名称：

证件号码：

授权人（外国投资者）签字、盖章：

被授权人（境内法律文件送达接受人）签字、盖章：

日期： 年 月 日

注：被授权人可以是外国投资者在境内设立的分支机构、拟设立分公司（被授权人为拟
设立公司的，公司设立后委托生效）或者其他境内有关单位或个人。

5. 청산 통지, 공고 및 채권등기

(1) 청산통지, 공고 및 채권 등기

가. 청산통지 및 공고

청산조는 <회사법> 제 186조에 따라 청산조가 설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득하게 있는 전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또한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¹³. 신문공고 횟수는 보통 1회이나 지역에 따라 2회 공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30일 이내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문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나. 채권등기

① 채권 신고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신고기간에 청산조는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없다.

② 채권등기에 대한 이의제기

채권자가 청산조가 심사하여 확정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조에 다시 심사 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청산조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재심사하여 확인된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인은 회사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청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보충신고 채권의 상환방법

채권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회사 청산절차 종결 이전에 보충 신고하는 경우에도 청산조는 해당 채권을 등기해야 한다. 보충 신고된 채권은 회사의 미

¹³ <규정> 제 11 조는 회사의 규모와 영업지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전국 또는 회사 등록지역에 소재하는 영향력 있는 省級 신문에 청산공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배 재산에서 상환할 수 있으며, 미분배 재산으로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인이 청산 잔여재산 분배 중 이미 취득한 재산으로 상환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단, 채권자의 중대한 착오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은 제외된다.

다. 통지 및 공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법률제재

청산조가 상술한 통지 및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인이 적시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해 상환을 받지 못하고, 채권인이 청산구성원이 이로 인해 야기된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이에 동의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산조는 통지 및 공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신청문서 양식

① 채권통지서

채권신고통지서

청도****유한공사 :

청도***유한공사(이하 “당사”)는 회사 경영과 관련한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동사회 회의의 만장일치 의결로 회사 경영중지를 결정하였다. <회사법>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대외무역경제협력국의 회답(200*년 **월 **일, 문건 **[200*]**호)을 취득하였다. 이에 귀사에 채권신고통지서를 발송한다.

청산개시일시 : 200*년 **월 **일

청산조 통신주소 : *****

청산조 구성원명단 : (위원장) *** (위원) ****, ****

연락담당 성명 및 연락방법 : (성명) ****

(연락방법) 전화 : *****

팩스 : *****

핸드폰 *****

본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에 유관 채권금액과 채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채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사가 당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도****유한공사 청산조

200*년 **월 **일

债权申报通知书

*****有限公司：

青岛***有限公司（以下简称“我公司”）因公司经营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经董事会一致通过，决定终止公司经营，根据《公司法》的规定，并经*****对外贸易经济合作局的答复（200*年**月**日，文件**[200*]**号），特向贵单位发送债权申报通知书。

清算开始日期：200*年 **月 **日

清算委员会通信地址：*****

清算委员会成员名单：（负责人）*** （委员）****、****、****

联系人姓名及联系方式：（姓名）****

（联系方式）电话：***** 传真：*****

手机：*****

请应当自接到本通知书之日起 30 日内，向我公司提交有关债权数额及与债权有关的证明材料。贵公司逾期未申报债权的，我公司视为贵单位放弃对我公司的债权。

青岛*****有限公司 清算组

200*年 **月 **日

② 신문광고

기업청산광고 (신문광고)

심양****유한공사는 <회사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비준을 받아 청산조를 설립하였다. 채권인은 본 공고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 청산조에 서면으로 채권을 신고하길 바란다. 기한이 경과하여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포기할 것으로 간주한다. 청산조 책임자: ***, 연락전화: 010-****-****, 연락주소: 북경시 조양구 ****.

심양****유한공사 청산조
200*년 **월 **일

企业清算公告 (报纸公告)

沈阳****有限公司依照《公司法》，经*****对外贸易经济合作局的批准，已经成立清算组。请债权人自本公告之日起 45 天内，向本公司清算组书面申报债权。逾期未申报，视为弃权。清算组负责人: ***, 联系电话: 010-****-****, 联系地址: 北京市朝阳区****。

沈阳****有限公司 清算组
200*年 **月 日

6. 자산정리 및 청산방안 제정

청산조는 채권채무 정리, 청산 관련 회사 미완료업무의 처리, 회사의 체납 또는 청산과정에서 발행한 세금 납부, 자산정리 등의 각종 청산활동을 진행한 후에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의결기구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산정리

청산조는 회사 자산으로 청산비용과 채무를 정리한 후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청산심계보고(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 등 포함)를 작성한다. 회사 자산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규정> 제 22 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해산하는 시점에서 주주가 납부하지 않은 출자금액도 모두 청산 자산이라는 점이다. 주주가 납부하지 않은 출자금에는 기한이 도래한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자금액과 분할출자와 관련하여 납입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출자금액을 포함한다.

구분	내용
제 1 순위	청산비용 ¹⁴
제 2 순위	종업원 임금, 사회보험료, 법정정보상금
제 3 순위	체납세금
제 4 순위	기타 채무

청산 자산을 정리한 후 회계사사무소에 위임하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청산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업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 주주의 출자비율 또는 합작조건에 따라 청산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그러나, 청산 잔여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한다. 이러한 채무상환 불능 상태에서 주주가 납입 완료하지 않은 출자금이 있는 경우, 채권인은 출자금을 미납한 주주 및 회사 설립 당시의 기타 주주 또는 발기인에게 미납 출자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상환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¹⁴ 청산비용에는 청산 재산의 관리/처분/분배에 소요되는 비용, 공고/소송/중재 등 비용, 청산회계감사 비용, 청산조 구성원 급여 및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활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

강제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산조가 청산 자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채권인과 협의하여 채무상환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 채무상환방안은 전체 채권인의 확인을 받고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청산조의 신청에 의거하여 인정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상환방안을 확인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산조는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2) 청산방안 제정 및 확인

청산조는 자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하여 주주,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청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주주총회에서 확인을 받고, 강제청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확인을 받게 된다.

청산방안에는 대차대조표와 기타 회계자료(채무정산표, 재산분배표, 청산현황 설명 등), 재산 목록 및 재무제표, 채권 및 채무목록, 재산처리 의견, 청산자산 평가 기준, 청산 잔여재산 분배원칙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청산조는 이들 기구의 확인을 받지 않고 청산방안을 집행할 수 없다. 만일, 청산조가 확인을 받지 않은 청산방안을 집행하여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손실을 야기하고 회사, 주주 또는 채권자가 청산조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청산조에 배상책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청산보고 작성과 보고

청산업무가 종결된 후 청산조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 최고의결기구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아 심의비준 기관에 보고하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하여 취소시킨다.¹⁵ 심의비준 기관은 청산보고서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접수한 후 전국외상투자기업 심의비준 관리시스템에 기업 종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회사는 이 증명서를 지참하여 세무, 세관, 외환, 공장 등 부문에서 말소 업무를 진행한다.

¹⁵ 강제청산의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청산조 설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을 완료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연장해야 한다.

(1) 청산보고 제출 및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말소

신청기관	법인설립을 심의 비준한 상무부문
제출서류	1. 기업 사전 해산에 관한 회답문건 2. 청산조가 작성하고 최고의결기구가 확인한 청산보고 3. <청산공고> 신문사본 4. 청산 회계감사보고서 5.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정/부분 원본
진행절차	신청 → 수리 → 심사 → 증명문건 발급
소요기간	약 5 일 업무일
처리 결과물	<비준증서 말소 증명> (批准证书注销回执)

(2) 신청문건 양식

상해*****무역유한공사 청산보고

상해*****무역유한공사 :

상해*****무역유한공사 (이하 “당사”)가 2009 년 3 월 16 일 개최한 동사회 결의에 따라 본 청산조는 2009 년 4 월 9 일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청산조 성립 이후 전개한 청산 업무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一. 청산원인

1. 당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당사 경영제품에 대한 중국 경내외 시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당사가 충분한 주문을 받지 못해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 유관 산업 역시 중국 경내외 시장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시장개척능력을 필요로 하나 경영자는 경영활동을 계속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불가피 하게 사전 해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二. 청산법률 근거 및 기간

1. 청산법률 근거:<회사법>, <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 등
2. 청산기간: 2009 년 3 월 16 일 - 2009 년 6 월 15 일

三. 청산업무 과정

당사의 청산팀이 성립된 이후 사전해산업무를 진행하였고 여기에는 공고 및 채권자 통지, 청산방안 제정, 재산 정리, 채무상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9 년 3 월 16 일 동사회회의 개최 및 당사 사전해산 결정
2009 년 3 월 23 일 상해시 상무위원회에 청산신청 제출

2009 년 월 일

책임자 : *** (서명) _____

위원 : *** (서명) _____

위원 : *** (서명) _____

당사 최고의결기구(동사회) 확인 의견 :

당사 청산조가 제출한 청산보고는 이미 동사회의 심의 확인을 거쳤다. 내용이 거짓되지 않으며, 허위일 경우 전체 동사가 모든 법률책임을 질 것이다.

동사장 : *** (서명) _____

동사 : *** (서명) _____

동사 : *** (서명) _____

2009 년 월 일

上海*****贸易有限公司 清算报告

上海*****贸易有限公司：

根据上海*****贸易有限公司（以下简称“我公司”）于二〇〇九年三月十六日召开的董事会决议，本清算组自二〇〇九年四月九日正式成立，现将本清算组成立后开展的清算工作报告如下：

一、清算原因

1. 从我公司设立到现在我公司经营产品在中国境内外市场上的需求量急剧下降，导致我公司无充分的定单，无法持续经营活动。
2. 相关产业在中国境内外市场上正发生重大的变化，这种市场变化导致必要开拓市场能力，但是经营者其实没有能力无法继续经营。因此，我公司不得已决定提前终止公司经营。

二、清算法律以及其期间

1. 清算的法律依据：《公司法》，《外资企业法》和其实施细则等
2. 清算期间：2009 年 3 月 16 日 - 2009 年 6 月 15 日

三、清算工作的步骤

我公司在成立清算组后，进行提前解散工作，包括公告和通知债权人，制定清算方案，清理财产，清偿债务等。具体工作事宜如下：

2009 年 3 月 16 日	召开董事会会议决定我公司的提前解散
2009 年 3 月 23 日	向上海市商务委员会提交清算申请
2009 年 3 月 31 日	领取上海市商务委员会的提前解散批复 (沪商外资批【2009】***号)
2009 年 4 月 9 日	成立清算组，在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备案清算组
2009 年 4 月 11 日及 18 日	在文汇报登载我公司清算公告

2009 年 4 月 23 日 领取**海关的《外商投资企业办结海关手续通知书》
2009 年 5 月 13 日 进行完毕税务登记注销业务
2009 年 6 月 3 日 债权债务申报期限终止 - 无债权, 债务申报
2009 年 6 月 10 日 领取上海**会计师事务所的《清算审计报告》
2009 年 6 月 12 日 制定清算报告
2009 年 6 月 15 日 董事会对清算报告确认。

四、公告情况

我公司于 2009 年 04 月 11 日、 04 月 18 日在文汇报登载了注销公告。

五、资产及负债清理情况

- 1、截止 2009 年 6 月 4 日止, 公司清算资产为 1, ***, ***. **元, 负债总额 0 元, 清算净资产 1, ***, ***. **元。
- 2、我公司从成立至今尚未开始经营。因此。除了货币资产之外, 没有任何资产。
3. 我公司也没有任何要偿还的负债和债务。因此无必进行负债清理。

六、剩余财产的分配情况

- 1、公司清算后的剩余净资产为 1, ***, ***. **元。
- 2、上述剩余净资产划给持有公司全部股权的唯一股东***。

上海*****贸易有限公司清算组
二〇〇九年 月 日

负责人: *** (签字) _____

成员: *** (签字) _____

成员: *** (签字) _____

公司最高决议机构（董事会）确认意见：

本公司清算组出具的清算报告已经公司董事会审议确认，报告内容不含虚假，如有虚假，全体董事愿承担一切法律责任。

董事长：*** （签字）_____

董事：*** （签字）_____

董事：*** （签字）_____

日期：二〇〇九年 月 日

7. 세무등기 말소

(1) 세무등기 말소 신청

회사는 관할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서 세무등기를 말소하게 된다. 단, 세무등기 말소 신청 이전에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 말소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세무등기 말소 과정에서는 세무국의 회사장부 심사, 세금 및 벌금 추징 등이 진행된다.

주관기구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제출서류	1. 서면신청서 2. 세무등기증 정/부분 3. 세무등기 말소 신청 심사표(지정양식) 4. 최고의결기구의 결의서 5.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취소문건 6. 미사용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령/구매장부, 재무도장, 세무 IC 카드 7. 세금계산서 반납 폐기 등기표(지정양식) 8. 위조방지 세무통제기업 GOLDEN TAX 카드 및 IC 카드 반납폐기표	1. 회계증빙(설립연도 ~ 현재) 2. 명세표 3. 현금일기장 4. 예금일기장 5. 총계정원장 6. 기타 제출요구 서류 등
진행절차	신청 → 수리(‘세무문서 수리통지서’발급) → (국가세무국) 체납세 금 및 벌금, 세금계산서 반납폐기 현황, 세무검사부문 조사 / (지 방세무국) 사회보험료 및 개인소득세, 각종 지방세 체납세금 및 벌금, 세무검사부문 조사 → 세무 행정처벌 결정 → 벌금 및 보 충세금 납부 → 등기 말소	
소요기간	약 2 개월	약 5 개월
처리 결과물	1. 세무등기 말소 신청 심사표(심사의견 명시) 2. “세무등기 말소 통지서	1. 세무등기 말소 통지서 2. 사회보험납부등기 말소 통지서

(2) 신청문건 양식

① 세무등기 말소 신청 심사표

세무등기 말소 신청 심사표

납세자 식별번호 :

--	--	--	--	--	--	--	--	--	--	--	--	--	--	--	--	--	--	--	--

납세자 명칭 :

연락주소					연락전화					
말소원인										
비준기관	명칭									
	비준문건번호 및 일시									
전입지 세무기관 코드번호										
세무기관 명칭										
전입주소										
납세인 (서명 날인) 법정대표인 (책임자) : 세무처리인 : 년 월 일										
아래는 세무기관이 작성										
실제경영기간					세제우대혜택					
책임자 :			처리담당 :			년 월 일				
세금계산서 관리단계 반납폐기 세금계산서 현황	구매수령세금계산서 명칭									
	구매수령세금계산서 수량									
	기사용 세금계산서 수량									
	잔여 세금계산서 수량									
	시작 및 종료번호									
세금계산서 구매수령부 명칭										
책임자 :			처리담당 :			년 월 일				
검사단계 청산현황			책임자 :		처리담당 :		년 월 일			
징수단계 세금결산납부 현황			책임자 :		처리담당 :		년 월 일			
등기관리 단계 심 사의견	세무기관	세무등기증正本		세무등기증 부존		기타 유관 증명				
	발급 증서									
	보관 현황									
	책임자 :		처리담당 :		년 월 일					
분지기구 명칭			세무등기 말소 현황			주관 세무기관				
비준의견	주관 세무기관:						(인감)			
	국장 서명 :						년 월 일			

注销税务登记申请审批表

纳税人识别号：

--	--	--	--	--	--	--	--	--	--	--	--	--	--	--	--	--	--	--	--

纳税人名称：

联系地址				联系电话			
注销原因							
批准机关	名 称						
	批准文号及日期						
迁入地税务机关代码							
税务机关名称							
迁入地址							
纳税人（签章）							
法定代表人（负责人）：		办税人员：		年		月 日	
以下由税务机关填写							
实际经营期限				已享受税收优惠			
负责人：		经办人：		年		月 日	
发票管理 环节缴销 发票情况	购领发票名称						
	购领发票数量						
	已使用发票数量						
	结存发票数量						
	起止号码						
	发票领购簿名称						
负责人：		经办人：		年		月 日	
稽查环节 清算情况		负责人：		经办人：		年 月 日	
征收环节 结算清缴税款情况		负责人：		经办人：		年 月 日	
登记管理 环节审核 意见	封存税务 机关发放 证件情况	税务登记证正本		税务登记证副本		其它有关证件	
负责人：		经办人：		年		月 日	
分支机构名称		税务登记注销情况		主管税务机关			
批准 意见	主管税务机关：				（公章）		
	局长签字：				年 月 日		

② 세무등기 말소 서면신청

심양****유한공사 세무등기 말소 신청서

***국가 (또는 지방) 세무국 :

심양****유한공사(이하 “당사”)는 한국 ***가 투자하여 200*년**월**일 설립된 외상독자생산기업이다. 당사의 경영범위는 ****, 등록자본금은 **만 달러(납입자본금 **만 달러), 법정주소*****, 경영기한 **년(200*년**월**일-20**년**월**일)이다.

당사는 200*년**월**일 귀 국에서 발급한 <세무등기증>(등기번호:*****)를 수령하였다. 그 후 당사는 계속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신고, 납세 등 세무처리업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황과 관련한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동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회사 경영의 사전중지를 결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그 실시세칙 및 <회사법>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귀 국에 세무등기 말소 신청을 제출한다.

당사의 사전중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당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당사 경영제품에 대한 중국 경내외 시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당사가 충분한 주문을 받지 못해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 유관 산업 역시 중국 경내외 시장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시장개척능력을 필요로 하나 경영자는 경영활동을 계속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불가피 하게 사전 해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술한 원인으로 인해 회사 및 투자자의 경제손실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회사는 말소신청을 제출한다. 당사는 중국 유관 법률에 따라 청산 및 말소수속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보증한다.

이를 비준하여 주길 바란다.

심양****유한공사 (날인)

법정대표 : ***

200*년 월 일

沈阳****有限公司注销税务登记申请

***国家（或地方）税务局：

沈阳****有限公司（以下简称“我公司”）是由韩国***投资设立，成立于200*年**月**日的一家外商独资生产企业。我公司的经营范围为****，注册资本为**万美元（实缴资本**万美元），法定地址为****，经营期限为**年（200*年**月**日~ 20**年**月**日）。

我公司于200*年**月**日领取了贵局发给的《税务登记证》（登记号：*****）。此后，我公司一直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等有关规定履行了一切申报、缴纳等办税业务。

但是，现因公司经营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经董事会一致通过，决定提前终止公司经营，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其实施细则及《公司法》等有关规定特向贵局提出注销税务登记申请。

我公司提出清算申请的原因是：

1. 从我公司设立到现在我公司经营产品在中国境内外市场上的需求量急剧下降，导致我公司无充分的定单，无法持续经营活动。
2. 相关产业在中国境内外市场上正发生重大的变化，这种市场变化导致必要开拓市场能力，但是经营者其实没有能力无法继续经营。因此，我公司不得已决定提前终止公司经营。

因上述原因，为了减少公司及投资者的经济损失，适应新的市场环境，我公司特提出注销申请。我公司保证将严格按照中国有关法律彻底进行清算以及注销手续。

望批复。

沈阳****有限公司（盖章）

法定代表：***

200*年 月 日

③ 세금계산서 반납폐기 등기표

세금계산서 반납폐기 등기표

납세인 식별번호 :

--	--	--	--	--	--	--	--	--	--	--	--	--	--	--	--	--	--	--	--

납세인 명칭 :

세금계산서 명칭	세금계산서 코드번호	반납폐기 유형	본수	부수	시작-종료 번호	종지번호	위조방지 세무 통제 IC 카드

반납폐기 사유 :

(서명날인)

법정대표인 :

세무처리인원

년 월 일

주관세무기관 세금계산서 관리단계 의견:

(법인인감)

반납폐기인 :

소각감독인 :

년 월 일

주: 본 표는 1 식 2 부로 1 부는 납세인이 보관하고 1 부는 세무기관이 보관한다.

发票缴销登记表

纳税人识别号：

--	--	--	--	--	--	--	--	--	--	--	--	--	--	--	--	--	--

纳税人名称：

发票名称	发票代码	缴销类别	本数	份数	起始号码	终止号	防伪税控 I C 卡

缴销原因：

（签章）

法定代表人：

办税人员：

年 月

日

主管税务机关发票管理环节意见：

（公章）

缴销人：

监销人：

年 月

日

注：本表一式二份，一份纳税人留存，一份税务机关留存。

④ 위조방지 세무통제기업 GOLDEN TAX 카드 및 IC 카드 반납폐기표

위조방지 세무통제기업 GOLDEN TAX 카드 및 IC 카드 반납폐기표

기업명칭 (날인)			세무등기 번호	
기업주소			연락전화	
GOLDEN TAX CAR D 명칭	GOLDEN TAX CAR D 수량	GOLDEN TAX CAR D 번호	GOLDEN TAX CAR D 대응 IC 카드 번호	
합계				
반납폐기사유				

기업 반납폐기인 :

주관세무기관 처리담당자 (서명날인) :

반납폐기일시 :

주: 본 반납폐기표는 1 식 2 부로 기업과 주관세무기관에서 각 1 부씩 보관한다.

防伪税控企业金税卡、IC 卡缴销表

企业名称（盖章）			税务登记证号	
企业地址			联系电话	
金税卡名称	金税卡数量	金税卡号		金税卡对应的 IC 卡号
合计				
缴销原因				

企业缴销人：

主管税务机关经办人（签章）：

缴销日期：

注：本缴销表一式两份，企业和主管税务机关各执一份

8. 세관등기 말소

(1) 세관등기 말소 신청

회사는 관할세관에 세관등기 말소 신청을 진행한다. 세관등기 말소와 관련하여서는 수입설비 등이 세관의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을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의 보충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과 가공무역과 관련하여 “가공무역 등기수책”의 핵소(核銷)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서 제 3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관기구	“세관등기증”을 발급한 주관 세관
제출서류	1. 서면신청서 2. <수출입화물 송/수화인 통관 주책 등기증>(“세관등기증”) 원본 3. 상무부문의 기업 사전 해산 신청에 관한 회답문건 4. 감면세 또는 가공무역 관리부문이 발급한 증명문건 (핵소완료 또는 감독관리가 해제되었음을 설명하는 의견서) 5. 기타 제출요구 자료
진행절차	수리 → 심사 → 세관등기 말소 결정 → 통지문 발급
소요기간	약 5 일 ~ 10 일 업무일
처리 결과물	기업 세관수속 처리완료 통지서 (企业办结海关手续通知书)

(2) 신청문건 양식

심양****유한공사 세관등기 말소 신청서

*** 세관 :

심양****유한공사(이하 “당사”)는 한국 ***가 투자하여 200*년**월**일 설립된 외상독자생산기업이다. 당사의 경영범위는 ****, 등록자본금은 **만 달러(납입자본금 **만 달러), 법정주소****, 경영기한 **년(200*년**월**일-20**년**월**일)이다.

당사는 200*년**월**일 귀 국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송/수화인 보관 주책등기증서>(등기번호:*****)를 수령하였다. 그 후 당사는 계속하여 유관 법률 및 법규에 의거하여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황과 관련한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동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회사 경영의 사전중지를 결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그 실시세칙 및 <회사법>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귀 국에 세관등기 말소 신청을 제출한다.

당사의 사전중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당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당사 경영제품에 대한 중국 경내외 시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당사가 충분한 주문을 받지 못해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 유관 산업 역시 중국 경내외 시장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시장개척능력을 필요로 하나 경영자는 경영활동을 계속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불가피 하게 사전 해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술한 원인으로 인해 회사 및 투자자의 경제손실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회사는 세관등기 말소신청을 제출한다. 당사는 중국 유관 법률에 따라 청산 및 말소수속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보증한다.

이를 비준하여 주길 바란다.

심양****유한공사 (날인)

법정대표 : ***

200*년 월 일

沈阳****有限公司注销海关登记申请

***海关：

沈阳****有限公司（以下简称“我公司”）是由韩国***投资设立，成立于 200*年**月**日的一家外商独资生产企业。我公司的经营范围为****，注册资本为**万美元（实缴资本**万美元），法定地址为*****，经营期限为**年（200*年**月**日~ 20**年**月**日）。

我公司于 200*年**月**日领取了贵局发给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注册登记证书》（登记号：*****）。此后，我公司一直按照有关法律法规等履行了义务。

但是，现因公司经营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经董事会一致通过，决定提前终止公司经营，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其实施细则及《公司法》等有关规定特向贵局提出提前海关登记注销申请。

我公司提出清算申请的原因是：

1. 从我公司设立到现在我公司经营产品在中国境内外市场上的需求量急剧下降，导致我公司无充分的定单，无法持续经营活动。
2. 相关产业在中国境内外市场上正发生重大的变化，这种市场变化导致必要开拓市场能力，但是经营者其实没有能力无法继续经营。因此，我公司不得已决定提前终止公司经营。

因上述原因，为了减少公司及投资者的经济损失，适应新的市场环境，我公司特提出海关登记注销申请。我公司保证将严格按照中国有关法律彻底进行清算以及注销手续。

望批复。

沈阳****有限公司（盖章）

法定代表：***

200*年 月 日

9. 재정등기 말소

(1) 재정등기 말소 신청

회사는 재정관리부문에 재정등기 말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한다.

주관기구	“재정등기증”을 발급한 재정국
제출서류	1. 서면신청서 2. <외상투자기업 재정등기 말소 신청표> (지역별 지정양식) 3. <재정등기증> 정/부분 원본 4. 상무부문의 기업 사전 해산 신청에 관한 회답문건 5. 기타 제출요구 서류
진행절차	수리 → 심사 → 재정등기 말소 결정
소요기간	당일 ~ 5 일 업무일
처리 결과물	재정등기 말소 통지서 또는 <외상투자기업 재정등기 말소 신청표>에 심사의견 명기 및 날인

(2) 신청문건 양식

① 서면신청서

심양****유한공사 재정등기 말소 신청서

*** 재정국 :

심양****유한공사(이하 “당사”)는 한국 ***가 투자하여 200*년**월**일 설립된 외상독자생 산기업이다. 당사의 경영범위는 ****, 등록자본금은 **만 달러(납입자본금 **만 달러), 법정주소****, 경영기한 **년(200*년**월**일-20**년**월**일)이다.

당사는 200*년**월**일 귀국에서 발급한 <재정등기증>(등기번호:*****)을 수령하였다. 그 후 당사는 계속 유관 법률 및 법규에 의거하여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황과 관련한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동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회사 경영의 사전중지를 결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그 실시세칙 및 <회사법>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귀 국에 재정등기 말소 신청을 제출한다.

당사의 사전중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당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당사 경영제품에 대한 중국 경내외 시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당사가 충분한 주문을 받지 못해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 유관 산업 역시 중국 경내외 시장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시장개척능력을 필요로 하나 경영자는 경영활동을 계속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불가피 하게 사전 해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술한 원인으로 인해 회사 및 투자자의 경제손실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회사는 재정등기 말소신청을 제출한다. 당사는 중국 유관 법률에 따라 청산 및 말소수속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보증한다.

이를 비준하여 주길 바란다.

심양****유한공사 (날인)

법정대표 : ***

200*년 월 일

沈阳****有限公司注销财政登记申请

***财政局：

沈阳****有限公司（以下简称“我公司”）是由韩国***投资设立，成立于 200*年**月**日的一家外商独资生产企业。我公司的经营范围为****，注册资本为**万美元（实缴资本**万美元），法定地址为*****，经营期限为**年（200*年**月**日~ 20**年**月**日）。

我公司于 200*年**月**日领取了贵局发给的《财政登记证》（登记号：*****）。此后，我公司一直依法履行有关义务。

但是，现因公司经营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经董事会一致通过，决定提前终止公司经营，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其实施细则及《公司法》等有关规定特向贵局提出注销财政登记申请。

我公司提出清算申请的原因是：

1. 从我公司设立到现在我公司经营产品在中国境内外市场上的需求量急剧下降，导致我公司无充分的定单，无法持续经营活动。
2. 相关产业在中国境内外市场上正发生重大的变化，这种市场变化导致必要开拓市场能力，但是经营者其实没有能力无法继续经营。因此，我公司不得已决定提前终止公司经营。

因上述原因，为了减少公司及投资者的经济损失，适应新的市场环境，我公司特提出注销财政登记申请。我公司保证将严格按照中国有关法律彻底进行清算以及注销手续。

望批复。

沈阳****有限公司（盖章）

法定代表：***

200*年 月 日

② 외상투자기업 재정등기 말소 신청표 - 광주시 양식

광주시 외상투자기업 재정등기 말소 신청표

작성일시 : 년 월 일

기업명칭 (날인)		재정등기번호		
주소		경제성질		
개업시기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등기말소 사유 (주관 부문이 있는 경우 주 관부문의 회답문건 첨부)				
재정수입 결산납부 현황	각항 재정수입 체납금, 벌금을 월 일 까지 납부한다.			
	납부과목	금액	납입체납금	납입벌금
	합계			
재정기관 심사의견	날인 : 년 월 일			
재정기관에 반납해야 하는 증서	재정등기증 정본 및 부분			

비고 : 본 표는 1 식 3 부이며, 심의비준 이후 기업, 대리기구 및 재정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广州市外商投资企业注销财政登记申请表

填表日期： 年 月 日

企业名称（盖章）		财政登记证号码		
地 址		经济性质		
开业时间		法定代表人或负责人		
注销登记的原因（如有主管部门附主管部门的批文）				
财 政 收 入 清 缴 情 况	各项财政收入滞纳金、罚款缴至 年 月 日止			
	应缴项目	款 项	应缴滞纳金	应缴罚款
	合 计			
财政机关审核意见	盖章： 年 月 日			
需交回财政机关证件	财政登记证件正本、副本			

注：本表一式三份。审批后企业、代理机构、财政机关各存一份

10. 외화계좌, 외환등기증 말소 및 청산재산 송금

(1) 외환관리국 심사

외환관리국의 심사를 받아 개설되어 있는 외화계좌 및 외환등기를 말소하고, 청산 잔여재산을 해외로 송금한다.

구분	내용
주관기구	<외환등기증> 발급한 외환관리국
진행업무	1. 외화계좌 말소 비준 2. 외환등기 말소 및 청산 잔여재산 송금 비준
구비서류	1. 서면신청서 2. 상무부문의 비준증서 말소 통지문 3. 청산보고 4. 청산 심계보고 5. 외환등기카드 6. 자본항목외환업무 심사비준문건 (계좌개설 허가 문건) 8. 세무등기 말소 통지 9. 협자보고(‘주금납입증명’. 자본금 납입시점에서 회계사사무소가 발급) 10. 은행 잔액증명 (외화 및 인민폐 모두 포함) 11. 세금 완납증명 ¹⁶
소요시간	약 15 일 업무일
내부절차	신청 → 심사 → 비준
처리결과물	1. 자본항목 외환업무 심사비준문건(계좌말소) 2. 자본항목 외환업무 심사비준문건 (외상투자기업 청산)

(2) 외화계좌 말소

구분	외화계좌 말소
주관기구	외환지정은행
구비서류	1. 신청서 (은행 지정양식)

¹⁶ 청산 잔여자산 즉, 기업청산시점에서의 전부 자산 또는 재산에서 납입한 등록자본금, 청산비용, 부채상화금액, 미분배이익, 공익금과 공적금 등을 공제하고도 자산이 남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소득으로 간주하여 투자자 또는 외국기업에게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업소득세 세율은 10%이며, 이를 중국에서 납부하여야 비로소 청산 잔여자산에 대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2. 법인인감, 재무장, 법인대표인감 3. 법인대표 여권사본 및 중문번역본 4. 대리인 신분증
소요시간	당일처리
내부절차	신청 → 계좌 말소
처리결과물	계좌말소문건

(3) 청산 잔여재산 송금

구분	청산재산 송금
주관기구	인민폐 기본계좌 개설은행 창구
진행업무	청산 잔여자산 송금
구비서류	1. 신청서(은행 지정양식) 2. 자본항목 외환업무 심사비준문건 (외상투자기업 청산) 3. 법인인감, 재무장, 법인대표인감
소요시간	당일처리
내부절차	신청 → 송금
처리결과물	1. ‘이체완료’ 인감 날인한 “借记通知银行副本”(Debit Note 은행부분) 2. ‘이체완료’ 인감 날인한 “Exchange Memo & A/C Advice” 3. ‘이체완료’ 인감 날인한 “收费水单”(수수료계산서) 등

(4) 신청문건 양식

상해*****무역유한공사의 외국측 청산소득 송금에 관한 신청

국가외환관리국 상해시분국 외자처:

1. 기업 기본현황

상해*****무역유한공사는 한국 자연인 ***가 단독으로 설립한 외상독자기업으로 2006년 11월**일에 설립되었다. 회사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은 모두 20만 달러이다. 등록자본은 2007년 5월**일 납입 완료되었고, 상해**회계사사무소에서 자본금 납입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산현황

경영부실로 인하여 회사 동사회는 2009년 3월**일 결의를 통해 회사의 청산해산을 진행하기로 동의하였다. 청산신청은 2009년 3월**일 상해시 상무위원회의 회답을 득하였다.

【청산조 설립】 회사 청산조는 3명으로 구성된다. 청산책임자는 ***이고, 청산위원은 ***와 ***이다.

【청산방안】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유관 법률법규에 따라 사전청산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동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조 설립
2. 청산조에서 청산기간에 <회사법>에 따라 직권 행사
3. 청산조가 유관 법률 규정에 따라 채권자 통지, 신문공고 진행
4. 채무신고 접수
5. 청산조가 회사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후 채무상환
6. 청산 잔여자산을 투자자 **에게 분배하여 청산 소득 송금 수속 진행
7. 청산완료 후 청산보고 작성하여 주주 또는 동사회의 확인을 받은 후 회사 등기기관에 보고, 회사 등기 말소 신청 및 회사 종지 공고.

【청산과정】

2009 년 3 월 16 일 동사회 회의에서 사전해산 결의
2009 년 3 월 23 일 상해시 상무위원회에 청산신청 제출
2009 년 3 월 31 일 상해시 상무위원회의 사전해산 회답 수령(후상자외비 【2009】 877 호)
2009 년 4 월 9 일 청산조 설립 및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청산팀 비안
2009 년 4 월 11 일-18 일 문화보에 회사 청산공고
2009 년 4 월 23 일 **세관의 <외상투자기업 세관수속 종결 통지서> 수령
2009 년 5 월 13 일 세무등기 말소업무 진행 완료
2009 년 6 월 3 일 채권채무 신고기한 종지 - 채권 및 채무신고 없음.
2009 년 6 월 10 일 상해**회계사사무소의 <청산 심계보고>
2009 년 6 월 12 일 청산보고 작성
2009 년 6 월 15 일 청산보고에 대한 동사회의 확인

【청산기간】 2009 년 3 월 16 일 - 2009 년 6 월 15 일

【청산의거】 <회사법>,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등 유관 법률법규

【채권채무의 정리 현황】2009 년 6 월 4 일 현재, 회사의 청산 자산은 1,***,***.**위안, 부채총액은 0 위안으로 청산 순자산은 1,***,***.**이다. 회사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경영을 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화폐자금을 제외하고 어떠한 자산도 없다. 회사는 또한 상환해야 할 부채와 채무가 없어 부채정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3. 투자 각 측에 대한 잉여자금의 분배방법과 근거

회사 정관 및 동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는 청산을 완료한 후 청산 순자산 인민폐 위안을 회사 전체 지분을 보유한 유일한 주주 *** 선생에게 분배한다.

4. 실제 송금금액의 계산방법

청산심계보고에 따라 2009 년 6 월 4 일 현재 회사자본은 인민폐 1,***,***.**위안이며 여기에서 비용 0 을 공제하고 청산완료일인 2009 년 6 월**일까지의 이자 인민폐 위안을 더하면 실제 분배가능한 잉여 자금은 인민폐_____만 위안이다. 이중, 회사 정관

과 동사회 결의에 따라 외국측에게 분배해야 하는 자금은 인민폐 _____ 위안이다. 외국측은 분배받는 청산소득 자금 인민폐 _____ 위안을 송금하고자 한다. 이에 대응하는 화폐자금은 자본금 외화계좌 **은행**지점 계좌번호*****에 있는 _____ 만 달러, 인민폐 계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에 있는 _____ 만 위안, 기타 인민폐 계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에 있는 _____ 만 위안이다.

5. 세무현황

회사는 2009년 5월**일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세금, 체납금 및 벌금도 없다.

이상과 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외국측 청산소득 자금 _____ 달러를 _____ 만 위안 인민폐를 사용하여 구입하고 투자자인 한국 자연인 ***선생에게 송금 지불하는 것을 신청한다.

상해*****무역유한공사

조직기구코드번호 : *****

일시 : 2009 년 6 월 일

연락인 : *** 연락전화 : 021-****-****, 핸드폰 번호 : _____

关于上海*****贸易有限公司清算外方所得资金汇出的申请

国家外汇管理局上海市分局 外资科:

1. 企业基本情况

上海*****贸易有限公司由韩国自然人***先生单独组建的外商独资企业，成立于 2006 年 11 月**日。公司投资总额，注册资金为**万美元。公司注册资本于 2007 年 5 月已全部到位，并由上海**会计师事务所完成验资。

2. 清算情况

由于经营不善的原因，公司董事会于 2009 年 3 月**日通过决议同意公司进行清算解算，该清算申请于 2009 年 3 月**日经上海市商务委员会批准文件批准。

【清算委员会成立】公司的清算委员会成员由三位组成。清算负责人为***，清算委员为***和***。

【清算方案】公司按《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等有关法律法规进行公司提前清算事宜。具体计划如下：

- 一、董事会决议解散之后成立清算组。
- 二、清算委员会在清算期间根据《公司法》行使其职权。
- 三、清算委员会按有关法律规定通知债权人，并在报纸上公告。
- 四、接受债务申报。
- 五、清算委员会在清理公司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后，清偿债务。
- 六、清算剩余资产给公司投资者成元庆分配，进行清算所得汇出手续。
- 七、清算结束后，清算组应当制作清算报告，报股东或董事会确认，并报送公司登记机关，申请注销公司登记，公告公司终止。

【清算过程】

- 2009 年 3 月 16 日 召开董事会会议决定我公司的提前解散
2009 年 3 月 23 日 向上海市商务委员会提交清算申请
2009 年 3 月 31 日 领取上海市商务委员会的提前解散批复
(沪商外资批【2009】***号)
2009 年 4 月 9 日 成立清算组, 在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备案清算组
2009 年 4 月 11 日及 18 日 在文汇报登载我公司清算公告
2009 年 4 月 23 日 领取**海关的《外商投资企业办结海关手续通知书》
2009 年 5 月 13 日 进行完毕税务登记注销业务
2009 年 6 月 3 日 债权债务申报期限终止 - 无债权，债务申报

2009 年 6 月 10 日 领取上海**会计师事务所的《清算审计报告》
2009 年 6 月 12 日 制定清算报告
2009 年 6 月 15 日 董事会对清算报告确认。

【清算期间】2009 年 3 月 16 日 - 2009 年 6 月 15 日

【清算依据】《公司法》，《外资企业法》和其实施细则等有关法律法规

【债权债务的清理情况】 截止 2009 年 6 月 4 日止，公司清算资产为 1, ***, ***. **元，负债总额 0 元，清算净资产 1, ***, ***. **元。公司从成立至今尚未开始经营。因此。除了货币资产之外，没有任何资产。公司也没有任何要偿还的负债和债务。因此无必进行负债清理。

3. 投资各方分配剩余资金的方法及依据

根据公司的章程和董事会决议，在公司清算完毕后将清算净资产人民币_____元划给持有公司全部股权的唯一股东***先生。

4. 实际汇出数额的计算办法

根据清算审计报告，截止到 2009 年 6 月 4 日，公司所有者权益为人民币 1, ***, ***. **元，扣减费用为零，加从清算结束日到 2009 年 6 月__日的利息为人民币 _____元，实际可供分配的剩余资金为人民币_____元。 其中，按照公司章程和董事会决议，外方应分得人民币_____元。外方欲将分得的清算所得资金人民币_____元汇出，对应的货币资金为资本金外汇帐户***银行**分行*****账号_____美元，***银行**分行*****账号_____元，***银行**分行*****账号_____元。

5. 税务情况

公司于 2009 年 5 月 13 日办理了税务登记的注销手续，现在没有任何欠税款、滞纳金和罚款。

以上情况特此说明，并申请外方清算所得资金共计_____美元付汇，_____元人民币购汇汇回元投资方韩国自然人***先生。

上海*****贸易有限公司
组织机构代码: *****
日期: 2009 年 6 月 日

联系人: *** 联系电话: 021-****-****, 手机号码: _____

11. 인민폐 계좌 말소

주관기구	인민폐 기본계좌 개설은행
제출서류	1. 신청서 (은행 지정양식) 2. 법정대표인 여권 원본 3. 대리인 신분증 원본 4. 은행계좌개설허가증(开户许可证) 원본 5. 법인인감, 재무장, 법인대표 인감
진행절차	신청 → 심사 → 말소
소요기간	당일처리
처리 결과물	계좌말소 증빙

12. 기업법인 영업집조 말소

(1) 말소신청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법인 영업집조> 말소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공상등기가 말소 되면 최종적으로 회사가 종지되게 된다. 또한, 공상등기 말소에 함께 회사의 법인인감 등도 같이 폐기된다.

주관기구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발급한 공상행정관리국
제출서류	1. 청산조책임자가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등기말소 신청서> (해당 공상국 지정양식) 2. <기업법인 영업집조> 정본 및 부분 원본 3. 세무등기 말소 통지서 4. 상무부문의 비준증서 말소 통지서 5. 세관등기 말소 통지서 6. 외환관리국 청산 비준 문건 7. 은행 계좌말소 증빙 8. 재정등기 말소 통지서 9. 신문공고 증빙 10. 법인인감, 재무장, 법인대표장 11. 청산보고서 12. 최고의결기구의 청산결의 문건 13. 청산조 <비안증명> 문건
진행절차	신청 → 심사 → 말소
소요기간	약 5 일 업무일
처리 결과물	외상투자기업 공상 등기말소 허가 통지서

(2) 신청문건 양식

외상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서

공상행정관리(총)국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조례>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니 심사하여 허가하여 주길 바란다. 동시에 제출하는 문건과 유관 첨부문건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 및 복사본과 원본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문서 제출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법률책임을 질 것을 승낙하는 바이다.

회사명칭

등록번호

청산조 책임자 서명

년 월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행정관리총국 제작

[HTTP://WWW.SAIC.GOV.CN](http://WWW.SAIC.GOV.CN)

[HTTP://WZJ.SAIC.GOV.CN](http://WZJ.SAIC.GOV.CN)

대표 지정 및 대리인 위탁 증명

_____을 지정/위탁하여 _____회사의 등기말소 사항을
처리한다.

지정/위탁 유효기간은 _____년__월__일부터 _____년__월__일까지이다.

위탁인

____년 ____월 ____일

비고 : 위탁인은 청산조 책임자이다.

지정대표 또는 위탁대리인 정보

성명		신분증 사본 붙이는 곳
단위		
부문		
연락전화		

외상투자기업 등기말소 제출서류

번호	문서명칭
1	청산조 책임자가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등기말소 신청서>
2*	심의비준 기관의 말소 동의 비준문건
3*	법에 의하여 내려진 결의 또는 결정
4*	법에 따라 비안 또는 확인된 청산보고
5	세무 및 세관이 발급한 세금 완납증명
6	분공사 등기말소 증명
7	영업집조 정보 및 부분
8	기타 관련 문건

규범적 요구사항 :

1. 신청서는 흑색 또는 파란색 만년필, 서명펜으로 작성하고 분명한 서체이어야 한다
2. 사본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원본을 제출한다.
3. 제출문건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번역단위의 인감이 날인된 상응하는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4. 제2항 영업기한 만료, 법원의 해산 및 파산 판결,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영업집조 취소, 설립허가 취소 또는 회사 설립등기의 취소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제3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결의 또는 결정을 의미한다. 결의 또는 결정의 내용은 신청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법원의 해산 및 파산 판결,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영업집조 취소, 설립허가 취소인 경우에는 각각 법원의 판결문건,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영업집조 취소 또는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 등기관리조례>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등기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회사 설립등기를 취소한 경우에는 회사등기기관의 회사 설립등기 취소에 관한 결정을 제출한다.
6. 제4항은 말소등기를 게재한 신문광고문을 포함한다.

외상투자회사 말소신청 사항

명칭					
등록번호					
주소					
회사유형					
법정대표인 성명					
청산조 구성원 비안 확인 문건 번호					
영업기한	년 월 일 ~		년 월 일		
말소사유					
분공사 등기말소 현황					
채권채무정리 현황					
비준(결정)기관		비준(결정)문 서번호			
광고현황	신문광고 신문명칭				
	광고일시				
영업집조 반납폐기 현황	정본수량		일련번 호		
	부본수량		일련번 호		
비고					

당안 귀속현황

당안 송달인	
당안 접수인	
당안 송달일시	
비고	

外商投资的公司注销登记申请书

工商行政管理（总）局：

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和《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等有关规定，现申请注销登记，请予核准。同时承诺：所提交的文件和有关附件真实、合法、有效，复印文本与原件一致，并对因提交虚假文件所引发的后果承担法律责任。

公司名称

注册号

清算组负责人签字

年 月 日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国 家 工 商 行 政 管 理 总 局 制

[HTTP://WWW.SAIC.GOV.CN](http://WWW.SAIC.GOV.CN)

[HTTP://WZJ.SAIC.GOV.CN](http://WZJ.SAIC.GOV.CN)

指定代表或委托代理人的证明

兹指定/委托 _____ 办理 _____ 公司注销登记事宜。
指定/委托的有效期限：自 年 月 日至 年 月 日

委托人

年 月 日

注：委托人为清算组负责人。

指定代表或委托代理人信息

姓 名		身份证明复印件粘贴处
单 位		
部 门		
联系电话		

外商投资的公司注销登记所需提交的文件

序号	文件名称
1	清算组负责人签署的《外商投资的公司注销登记申请书》
2*	原审批机关同意注销的批准文件
3*	依法做出的决议或者决定
4*	经依法备案、确认的清算报告
5	税务和海关部门出具的完税证明
6	分公司的注销登记证明
7	营业执照正、副本
8	其他有关文件

规范要求：

- 1、申请书应用黑色或蓝黑色钢笔、签字笔填写，字迹应清楚。
- 2、以上文件除标明复印件外，应提交原件。
- 3、以上所提交的文件若用外文书写，需提交加盖翻译单位印章的相应中文译本。
- 4、第2项营业期限已满、法院裁定解散、破产的、行政机关责令关闭、吊销营业执照、吊销设立许可或撤销公司设立登记的不需提交。
- 5、第3项指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以及公司章程规定做出的决议或决定，决议或决定的内容与所申请的事项应当一致。法院裁定解散、破产的，行政机关责令关闭、吊销营业执照、吊销设立许可的，应当分别提交法院的裁定文件、行政机关责令关闭、吊销营业执照或吊销设立许可的决定。因违反《公司登记管理条例》有关规定被公司登记机关依法撤销公司设立登记的，提交公司登记机关撤销公司设立登记的决定。
- 6、第4项应包括刊登注销公告的报纸报样。

外商投资的公司注销申请事项

名 称				
注 册 号				
住 所				
公司类型				
法定代表人 姓 名				
清算组成员备案确 认文书编号				
营业期限	自 年 月 日至 年 月 日			
注销原因				
分公司注销登记 情况				
债权债务清理情况				
批准（决定）机关		批准（决定） 文 号		
公告情况	公告报纸名称			
	公告日期			
营业执照 缴销情况	正本数量		编号	
	副本数量		编号	
备 注				

归档情况

送 档 人	
接 档 人	
送档日期	
备 注	

13. 조직기구대마등기 말소

주관기구	“조직기구대마등기증”을 발급한 기술감독국
신청시기	<기업법인 영업집조> 말소 이후
제출서류	1. 조직기구대마증 정본 및 부분 원본 2. 조직기구 IC 카드 3. 행정창구에서 제공하는 말소신청서 (현장기업) 4. 외상투자기업 공상등기 말소 허가 통지서 5. 기타 제출요구 서류
진행절차	수리 → 심사 → 말소 결정 → 말소 통지문 발급
소요기간	당일처리
처리 결과물	조직기구대마등기 말소 통지서

14. 통계등기 말소

주관기구	“통계등기증”을 발급한 통계국
신청시기	<기업법인 영업집조> 말소 이후
제출서류	1. 통계등기증 정본 및 부분 원본 2. 행정창구에서 제공하는 말소신청서 (현장 기업) 3. 외상투자기업 공상등기 말소 허가 통지서 4. 기타 제출요구 서류
진행절차	수리 → 심사 → 말소 결정 → 말소 통지문 발급
소요기간	당일처리
처리 결과물	통계등기 말소 통지서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 설립 당시 통계등기를 진행하지 않아 말소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제 3 장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검토

중국기업의 청산실무를 수행해오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기업을 저수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저수지 아래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만약 필요에 의해서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낼 경우에는 평소 보이지 않았던 진흙과 온갖 쓰레기가 일시에 드러나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업무량이 많아서 회사가 바쁘게 돌아갈 때는 회사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회사의 운영을 중단하고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 동안 잠재되었던 모든 리스크들이 일시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청산은 기업이라는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회사 내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가 드러나게 되고 이는 곧 청산비용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청산실무에서는 사전에 잠재리스크로 인하여 발생할 청산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 절 청산비용의 추정

중국기업 청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산비용은 청산관련 직접비용과 잠재적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비용은 청산조 구성원의 급여와 활동비 등 청산조 유지관리비, 신문광고비용, 청산감사수수료, 대행 위탁수수료 등이 있다.

종류	내용
청산조유지관리비	청산진행기간 동안 회계 및 무역직원의 급여 및 각종 사무관리비 등의 유지비
신문광고비용	청산공고를 위한 신문광고비용 2 회
감사수수료	청산개시시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청산감사를 받아야 하며, 동 감사수수료는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함.
실무대행수수료	청산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행수수료

잠재적 비용은 관련 주무관청의 조사에 따른 우발부채, 재산의 긴급처분에 따른 염가

판매, 청산기간 중 정상조업이 불가능함에 따른 기회비용 등으로 예측이 쉽지 아니며, 그 금액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속 기업상태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청산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우발부채를 관련 정부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부문	내용	해당여부 확인
세무국	2면3감 기업소득세와 지방세 반환	과거 2개년간 기업소득세와 지방세를 100%감면 받았으나 청산함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감면받은 부분을 반환해야 함.
	재투자 기업소득세환급액의 반환	재투자로 인하여 향유한 우대혜택이 있으면 반환해야 함.
	국산설비 증치세 환급액의 반환	국산설비 구입에 따라 환급받은 증치세가 있으면 반환해야 함.
세관	수입설비의 면세 혜택 반환	해외로부터 설비를 면세로 수입한 것이 있다면 동 면세부분을 반환해야 함.
	가공무역용 무상 수입설비 반송	무상으로 수입된 설비는 청산시 원 소유자에게 반납해야함. 청산비용 조달을 위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수입관련 증치세와 관세를 납부해야함.
	가공무역용 원재료 수책핵소	가공무역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수책핵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핵소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내수판매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됨.
외환관리국	수출대금 외환핵소	수출대금 중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대손의 원인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내수판매로 보아 증치세를 부과함.
	수입대금 외채등기	해외채무는 사전에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하지 않을 경우 해외송금에 문제 발생가능.
부동산임대주	계약기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상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지불조항을 확인.
노동국	사회보험료 미납분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한 부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종업원	경제보상금 (퇴직금)	청산으로 인한 노동계약해지로 지급할 경제보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근속연수 계산함.

1. 2 면 3 감의 기업소득세와 지방세 우대혜택의 반환

2 면 3 감은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해부터 기업소득세를 2 년간 100%면제하고 그 후 3 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2 면 3 감은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으로서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감면요건은 3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생산성 업종일 것, 둘째 외상투자기업일 것, 셋째 실제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일 것 이다.

만약 비생산성업무(도소매업 등)를 겸영하는 경우 당연도 전체 매출액 중 생산성 업무 수익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면 생산성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요건은 외국인 지분비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 지분을 중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 지분비율 요건에 미달하면 더 이상 감면혜택을 누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실제경영기간 10 년 요건에서 실제경영기간이란 실제 생산경영활동(시험생산, 시험영업 포함)을 시작한 날로부터 중지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경영기간의 기산일은 영업집조(營業執照)상의 법인성립일이 아니라 실제 생산개시일부터 기산하게 된다. 2 면 3 감은 기업이 10 년 이상 경영할 것으로 추정하고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만약 청산으로 인하여 실제경영기간이 10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감면 받은 부분은 전액 반납해야 한다.

한편, 지방세 우대혜택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과세소득 획득연도부터 일정기간 지방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다. 지방세 우대혜택의 요건은 2 면 3 감의 감면요건과 유사하고 특히 경영기간 10 년의 면세요건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실제경영기간 10 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중도 청산한다면 감면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미 감면 받은 부분은 전액 반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재투자 기업소득세환급

재투자 환급은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이윤을 중국내의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환급하는 것이다. 이 우대혜택은 외국투자자가 획득한 이윤을 배당으로 회수해 가지 않고 그 기업의 등록자본금으로 자본전입 하거나 다른 외상투자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피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에서 경영기간이란 외국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이윤을 그 기업이나 이미 생산경영을 개시한 기타외상투자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자금이 실제 투입된 날로부터 생산경영을 중지한 날까지이다. 또한 재투자하여 새로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신설 기업이 실제 생산경영활동(시험생산, 시험영업 포함)을 시작한 날로부터 중지한 날까지 이다.

따라서 만약 피투자기업이 경영기간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청산한다면 감면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환급 받은 부분은 전액 반납해야 한다.

3.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

국산설비 구입에 대한 매입증치세 환급은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산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 부담한 증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환급요건은 첫째 증치세 일반납세자이고, 둘째 외상투자기업이며, 셋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에 속하는 외상투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매입증치세를 환급한 설비는 관할 세무기관이 5년간 감독하며 관리감독기간 내에 양도, 증여, 임대, 재투자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환급 받은 증치세를 반납해야 한다. 반납해야 할 금액은 감가상각 후 미상각잔액에 환급 당시의 증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만약 회사가 증치세 환급설비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청산한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환급 받은 증치세 중에서 감가상각 후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납해야 한다.

4. 수입설비의 면세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 면세는 외상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생산설비의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면세요건은 첫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류와 제한류에 속하고, 둘째 기술이전형 외국인 투자항목으로서, 셋째 투자총액의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사용설비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2002년 10월 1일 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으로서 100% 직접수출을 전제로 하는 허가류 외국인투자항목의 수입설비는 일단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한 후 투자한 날로부터 관련부서는 수출상황에 대하여 5년간 심사하여 사실에 부합되면 매년 세액의 20%를 환급하여 5년 내에 전부 환급하여 준다.

수입세금 면세설비는 세관이 감독하게 되며 관리감독기간(5년~8년)내에 양도, 임대 등으로 전용하면 면세 받은 관세와 증치세를 반납해야 한다. 반납해야 할 금액은 감가상각 후 미상각잔액에 면세 당시의 관세율과 증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또한 100% 직접수출조건으로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선징수 후환급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간 내에 100%수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만약 회사가 면세수입설비의 구입일로부터 관리감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청산한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 시 면세 받은 관세와 증치세 중에서 감가상각 후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청산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면세설비가 세관의 사후감독 관리기간 하에 있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관세, 증치세 납부 후 중국 내수판매
- 세관의 비준을 받고 다른 면세혜택 향유 외상투자기업에게 판매
- 세관에 신고하여 본국으로 반환(Ship-Back, 退運) 조치
- 세관으로 무상 양도 (무단 폐기 시에는 사후관리 위반이 됨)

5. 무상제공설비

가공무역을 위하여 무상제공된 설비는 임가공을 위하여 외국투자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입된 설비로서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받은 설비이다. 무상제공설비는 가공무역계약

서상 외국투자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가공공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동 설비는 5년간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매년 무상제공 설비의 사용상황을 상무부문과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세관의 관리감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청산하게 되면 무상제공설비는 세관 관리감독해제 수속을 한 뒤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중국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후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가공무역용 보세원재료 수책핵소

가공무역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수책핵소¹⁷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핵소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내수판매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중국에서 무역은 일반무역과 가공방식무역으로 구분된다. 가공방식무역은 다시 내료가공(来料加工)방식과 진료가공(进料加工)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료가공과 진료가공은 우리나라의 국내거래에서 무상사급가공과 유상사급가공과 유사한 개념인데 단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진 무역거래라는데 차이가 있다. 즉, 내료가공은 무상사급방식의 임가공으로 원재료의 소유권 이전이 없이 오로지 임가공료의 지급방식이고, 진료가공은 유상사급방식의 임가공으로 원재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내료가공과 진료가공의 공통점은 다 같이 임가공후 수출을 전제로 하므로 수입 시 관세와 증치세가 면세되고, 따라서 등기수책 작성 등 사후관리가 엄격하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내료가공방식은 원부자재 자체가 대부분 무상제공되고 단순 임가공이므로 내료가공방식하에서 발생한 매입증치세는 퇴세가 안되며 중국내수시장 판매가 불가능하다.

7. 수출대금 외환핵소

¹⁷ 핵소(核销)란 보세(保税)원재료를 관리하는 수책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을 해제하는 절차임. 수책을 핵소함으로써 보세상태의 원재료가 면세로 확정되는 것임.

수출대금 중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대손의 원인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내수판매로 보아 증치세를 부과하게 된다. 외환관리국의 <수출외환핵소관리방법>에 의하면 화물 수출 후 수금일이 경과하여 30 일이 내에 수출외환을 회수하여 핵소해야 한다. 핵소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세금과 관련해서는 수출환급이 불가능하고 내수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청산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불능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채무자가 고의 또는 자금난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해외 채무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부도증명서류를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수출외환의 미핵소와 관련한 벌금과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 수입대금 외채등기

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관리방법>에 의하면 해외채무는 사전에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하지 않을 경우 해외송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외환관리국에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채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외채권자로부터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한편, 해외의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을 경우 상계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수출외환핵소관리방법실시세칙>에 의하면 외환관리국에 등기된 동일한 해외회사와의 채권채무는 상호 상계가 가능하다. 또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해외 바이어의 손해배상청구금은 국외 품질감독기관의 품질감증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얻은 후 미수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9. 임대계약기간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기업청산 시 실무적으로 크게 부딪히는 문제중의 하나가 공장 임대인과의 문제이다. 임대계약상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지불조항이 없는 경우는 물론 비록 명문화된 위약

금지불조항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트집을 잡아서 청산기업의 설비와 재고자산의 반출을 금지하는가 하면 임대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른 과도한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는 청산개시와 동시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채권자 등 제 3 자를 통하여 청산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고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청산재산을 보관함으로써 추가적인 임대료의 발생을 중단시키고 중도계약해지 따른 위약금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10. 사회보험료 미납분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한 부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계산의 기수(基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인 임금은 전 연도임금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2009 년도의 사회보험료는 2008 년의 월평균임금이 되며, 월평균임금이란 일정기간 내에 기업이 직공에게 지급한 급여와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급여, 상여, 급여성 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한다.

11. 경제보상금의 지급

청산으로 인한 노동계약해지로 지급할 경제보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근속연수 계산한다. 노동계약법에서 경제보상금과 관련된 핵심사항은 경제보상금의 지급사유, 계산방법 및 지급한도라고 할 수 있다.

(1) 경제보상금 지급사유

다음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노동계약법 제 46 조).

- ① 노동자가 이 법 제 38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의 위법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사직통고)
- ② 사용자가 이 법 제 36 조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의 해지를 제의하고 노동자와 협상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노동계약의 합의 해제)

- ③ 사용자가 이 법 제 40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노동자의 질병, 업무외 원인 부상, 업무능력부족, 계약 환경변화에 따른 해고 등 비과실성 해제)
- ④ 사용자가 이법 제 41 조 제 1 항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파산법에 근거한 기업재편으로 노동계약 해제)
- ⑤ 사용자가 계약에 약정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조건을 제기하여 노동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상황은 제외하고 이 법 제 44 조 제 1 호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노동계약의 만기종료시 회사측사유로 계약 미갱신)
- ⑥ 이 법 제 44 조 제 4 호, 제 5 호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파산, 영업취소/해산에 따른 노동계약 해제)
- ⑦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경우.

위의 경제보상금 지급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① 노동계약의 중도해제

- 노동자의 사직원 제출로 인한 노동계약의 해제(자발적 사직)
- 사용자의 노동자 과실성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징계해고)
- 시용기 중 채용조건 불부합을 사유로 한 노동계약의 해제
- 기업의 분할과 합병시 노동자의 협상일치로 노동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② 노동계약의 만기종료

- 노동계약 만기종료시 노동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해서 양로보험의 수급을 개시한 경우
- 노동자의 사망

(2) 경제보상금 계산방법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의하면 경제보상금은 당해 기업에서의 노동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매 1 년에 1 개월 임금기준으로 지급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인 경우는 1 년으로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반월 임금이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월임금이라 함은 노동계약 해제 또는 종료 전 노동자의 12 개월 평균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보상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경제보상금 = 월평균임금*근속연수

① 월평균임금의 계산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 27 조에 의하면 경제보상금에 관계되는 월임금은 노동자가 취득해야 할 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에는 시간제 계산임금 혹은 작업량제 계산임금 및 상여(獎金), 수당(津貼) 및 보조금(補貼) 등 화폐성 수입이 포함된다.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전 12 개월의 노동자 평균임금이 당해지역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을 경우, 당해지역의 최저임금표준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각종수당 등 부대임금과 잔업비 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도 월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하며, 기업이 실제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본급이나 최저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이다.

② 근속연수의 계산

근속연수의 계산은 노동계약의 만기종료와 중도해제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계산한다.

노동계약의 만기종료(회사측 사유로 계약 미갱신): 계약만기일-2008 년 1 월 1 일

노동계약의 중도해제:

회사측 해제(질병, 업무불감당, 감원 등 노동자의 비과실 상황): 해제일-고용일

노동자측 해제(사측의 위법노동행위에 따른 피동사직)

사회보험금위법납부(신법 신규도입): 해제일-2008 년 1 월 1 일

임금연체, 잔업비 계산위반(과거부터 존속): 해제일-고용일

(3) 경제보상금 지급한도

노동계약법에서는 고수입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경제보상금 계산공식에서 월평균임금은 기업소재지 전년도 직공 월평균임금의 3 배이고 근속연수는 1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의하면 노동자의 월임금이 기업 소재지의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가 공포한 그 전년도 직공 평균임금의 3 배보다 많은 경우, 당해인에 대한 경제보상금 기준은 직공 월평균임금의 3 배로 지급하며, 당해인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는 연수는 최고 12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미납 자본금 문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등록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기업의 청산시점에 등록자본금 중에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산재산에 속하며 기존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미납입한 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면 미납 자본금을 납입한 후 청산잔여재산으로 회수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납입이 없이도 청산을 진행할 수 있다.

제 2 절 청산과 세무

1. 외상투자기업의 청산관련 세법

외상투자기업의 청산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세법규정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규명칭	조항	내용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 50 조	해산, 영업허가취소, 파산의 상황에 처한 납세자는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함
기업소득세법 (신기업소득세법)	제 53 조	기업이 청산할 경우 그 청산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함
	제 55 조	연도 중 경영종료 시 기업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 11 조	청산소득의 정의와 투자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소득의 구분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구기업소득세법)	제 8 조	생산성기업 10 년이상 경영시 조세감면
	제 10 조	5 년 이상 경영 기업에 대한 투자시 재투자세액감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국산설비 구매투자에 대한 기업소득세감면통지 (재세자[2000]49 호)	제 7 조	구매일로부터 5 년내 임대 또는 양도시 감면 취소
외상투자기업의 국산설비투자액에 증 치세 환급 관리 방법의 통지 (국세발[1999]171 호)	제 16 조	사후관리기간 5 년내에 임대 또는 양도 시 증치세 추정
기업청산단계소득세관리잠행방법 (청국세발[2008]161 호)	전체	청산관련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신고방법
기업청산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처리 문제통지 (재세[2009]60 호)	전체	청산기업과 관련한 청산소득에 대한 기 업소득세의 계산방법
기업청산소득세 신고표의 통지 (국세함[2009]388 호)	전체	청산소득세의 신고방법과 신고서의 작 성방법

2. 경영소득과 청산소득의 구분

<기업소득세법> 제 55 조는 연도 중에 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경영 종료일 까지를 1 과
세기간으로 하여 경영종료일로부터 60 일 내에 기업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 말
소등기 전에 청산소득에 대하여 역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6 월
1 일을 청산 개시일로 하여 청산을 진행한다면, 1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를 1 개의 과
세기간으로 하여 경영활동에 의한 기업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경영활
동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최종 신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후 청산을 진행하여 청산종
료일이 11 월 30 일이라면 6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가 청산기간으로서 역시 1 개의
과세기간으로서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청산절차에 진입하는 연도에는 경영활동에 의한 기업소득과 청산활동에 의
한 청산소득의 두 가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들 두 소득의
계산시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세법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즉 경영활
동의 계속을 전제로 적용하는 유가증권과 재고자산의 평가기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 및 이연 자산의 상각, 대손충당금의 설정, 퇴직충당금의 설정 등 평가에 관
련된 대부분의 회계기준은 청산소득계산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계속 기업을 전제
로 한 이월결손금, 광고비한도초과액,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등 각종 세법상의 유예

또는 우대조항은 청산이 개시된 이후로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진다. 따라서, 경영활동의 계속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회계 및 세법상의 유예된 조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산개시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산개시 전	청산개시 후	
	청산과정	청산종료일
경영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청산재산의 처분에 따른 증치세와 영업세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3. 청산소득의 계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 11 조에 의하면 ‘청산소득’이란 기업 전체 자산의 현금변환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순자산 장부가액, 청산비용 및 관련세금을 차감한 후 잔액이다.

$$\text{청산소득} = \text{순자산현금변환가치} - \text{순자산장부가액} - \text{청산비용} - \text{관련세금}$$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산기업이며, 세율은 25%, 납세기한은 기업등기 말소 전이된다.

한편, 투자자인 주주는 청산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 중 청산기업의 분배되지 않은 미분배이익과 이익준비금으로부터 분배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인식하며, 잔여재산에서 상기 배당소득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하거나 낮다면 투자자산 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인식한다. 따라서 청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투자자는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다. 즉, 잔여재산 중에서 미분배이익과 이익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과 투자원금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청산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외국투자자는 중국 현지법인이 배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만약 청산기업에 대한 지분비율이 25%미만인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외국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중국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의 발생여부는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제 13 조에 따라 청산회사의 재산이 주로 중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의 거주자인 한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양도차익에 대해서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법>과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청산 잔여재산가액	미분배이익+ 이익준비금		배당소득	5%(or10%)
	기타	처분이익	지분양도차익	0%(or10%)
		투자원금	취득원가	n/a

4. 청산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청산이 개시되면 청산을 위한 활동으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 자산중 상표권,특허권등의 무형자산과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익 발생유무를 불문하고 처분액의 5% 상당액의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상투자기업은 잠정적으로 성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국세발 [1994]38 호)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폐기할 경우 증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중국 증치세법은 폐기나 파손 등 비정상손실과 관련한 재고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입 당시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해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청산을 진행하면 생산설비를 처분하게 되는 데 생산설비의 도입 시에 대부분의 외상투자기업은 관세, 증치세를 감면 받거나 국산설비의 경우 증치세와 더불어 투자액에 상응하는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세 우대의 경우에도 역시 5년간의 사후 관리기간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세우대혜택의 반환의무에 대해서는 제1절 청산비용의 추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청산 개시 이후의 세무 관리

기업이 청산할 경우 세무당국은 설립초기부터 관련세무증빙을 조사하게 되므로 기업은 관련장부와 거래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과 비정상적인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음은 외상투자기업이 청산할 경우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청산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기업소득세
- 둘째, 청산개시일부터 청산종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기업소득세
- 셋째, 청산기간 중 청산재산 매각에 따른 증치세, 영업세 및 소비세
- 넷째, 청산종료 시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 다섯째, 청산개시로 인하여 우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미 받은 우대혜택을 반납해야 할 세금

현실적으로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경영환경의 악화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업이 정상적인 청산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청산을 하기 때문에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청산소득은 아주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청산으로 인하여 과거에 누렸던 세금우대혜택이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미 받은 우대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과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적정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겠다. 또한 청산 시 반납해야 하는 우대혜택의 종류는 무엇이며,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한 후 청산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비정상적 철수에 따른 법률적 문제

비정상적인 철수란 합법적인 청산을 거치지 않고 기업을 방치하거나 도피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합법적인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회

사의 명의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민·형사책임을 한국 또는 중국에 청구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세금문제, 노동문제 등의 행정책임의 부담과 장래 중국기업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해당기업 및 법정대표의 행정적 책임

<회사법> 제 147 조와 <기업법정대표인등기관리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영업집조(營業執照)을 말소 당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기업의 법정대표를 담당한 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말소 당한 날로부터 3 년간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고급 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당기업 및 법정대표의 민사책임

청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의 민사책임에 대한 중국 각 지방법원의 해석은 다양하다.

유형 1: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해당기업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

유형 2: 기업이 해산하였으나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배상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해석

향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전망으로는 현재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기업의 해산, 청산에 관한 사법적 해석을 제정하였고 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 사법해석이 심판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청산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특정 상황 하에서는 기업의 채무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청산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에게 물어 투자한 기업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게 한다면, 중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출자액에 한하

여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과 정면 배치되므로 법률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해당기업, 법정대표 및 투자자의 형사책임

(1) 허위출자, 출자도피죄 (형법 제 159 조)

허위출자와 출자도피죄의 성립조건은 기업 해산 시 다른 회사에 미 변제채무가 존재하면서 허위출자(가장납입)하였거나 출자금을 빼돌린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이다.

<형법> 제 159 조에 의하면 회사의 발기인 또는 투자자가 회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폐, 실물을 교부하지 않거나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출자하는 경우, 또는 회사 성립 후 출자금을 다시 불법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이 크고 부정적 결과가 엄중하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한다. 허위 출자금액 또는 불법인출 금액의 2% 이상 1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단위가 전항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한다.

(2) 밀수죄 (형법 제 154 조)

밀수죄의 성립조건은 기업 해산 시 합법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 및 수입증치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아 사후관리 기간(생산설비의 경우 통관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원재료, 완제품, 생산설비 등)을 중국 세관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감면 받은 세금을 보충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경내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3) 사기죄 (형법 제 224 조 제 4 항)

사기죄의 성립조건 미변제 채무가 존재하는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해산을 시도한 경우 채권자가 계약사기죄로 제소할 수 있다.

<형법> 제 224 조 4 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지불한 화물, 대금, 착수금을 수취하거나 재산을 담보 받은 후 행방을 감출 경우 계약 사기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며,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특별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벌금, 재산을 몰수한다.

제 4 절 청산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

1. 회사서류의 정리와 보관

회사의 서류는 회사의 주장을 피력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세관과 세무국의 청산실사에 대비하여 회사의 핵심서류인 무역관련서류와 회계관련 증빙들이 완전하게 보관되고 있고 무역직원과 회계직원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기업 재산의 관리 강화

청산과정에서 공장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기업재산의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재산의 관리부실로 인한 법률적 책임으로는 도난이나 분실로 인하여 주주의 배상 책임이나 가압류중인 자산을 임의로 처분 또는 이전함에 따라 기업책임자의 법률책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면세물품의 분실로 인하여 기업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업재산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자체적으로 경비인원을 채용하거나 보안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기업의 재산 및 회계서류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도난사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남긴다.

셋째, 법원에 가압류된 재산은 가능한 한 가압류 신청한 채권자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경비인원을 파견하여 보고하게 한다.

3. 신고한 채권에 대한 확정 및 처리

회사의 채권자가 청산조에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심사통보 후 만약 채권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기업의 청산절차를 완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 청산기간을 단축하기 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탁의 방법이다.

4. 자산의 처분방법과 부채의 상환방법에 대한 논의

청산이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청산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자산의 처분방향과 채권자에 대한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뒤 청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자산 중에서 민감한 면세설비 등 자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면세수입설비의 처분

면세수입설비는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면세수입설비의 처리에 대해서는 <세관의 외상투자기업 수출입화물의 관리와 징수방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방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의 청산비준일로부터 15 일 내에 면세설비에 대하여 세관에 핵소신청을 해야 하며, 관리감독기간 내에 있는 면세설비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내자기업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후 잔액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반환한다.

둘째, 청산기업과 동등의 면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할 경우 세관의 감독이전수속을 한후 계속해서 면세혜택을 유지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셋째, 세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국외로 반송할 수 있다.

상기의 면세수입설비에 대한 세관의 수속을 마친 후 세관은 <기업세관수속종결통지>를 발급하므로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한다.

(2) 보세원재료의 처리

가공무역을 위한 보세원재료도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면세수입설비의 처리에 대해서는 <세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방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방법>에 의하면 청산등의 사유로 가공무역계약이 사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내에 세관에 핵소를 신청해야 한다.

내료가공의 경우 보세원재료의 소유권은 가공위탁자에 있으므로 청산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나, 진료가공은 청산재산에 해당한다. 진료가공용 보세원재료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내수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무역국과 세관의 비준을 득한 후 수입관련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세관의 동의를 거친 후 국외로 반송할 수 있다.

셋째, 보세원재료에 대하여 법원에서 가압류를 한 경우 기업은 5 일 내에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상기의 보세원재료에 대한 세관의 수속을 마친 후 세관은 <핵소종료통지서>를 발급하므로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무상제공설비의 처리

가공무역을 위하여 무상제공된 설비는 임가공을 위하여 외국투자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입된 설비로서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무상제공설비는 가공무역계약서상 외국투자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가공공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동 설비는 5 년간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매년 무상제공설비의 사용상황을 상무부문과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세관의 관리감독기간 5 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청산하게 되면 무상제공설비는 세관 관리감독해제 수속을 한 뒤 투자자에게 재반출할 수 있으며, 중국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후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노동문제의 원활한 해결

청산진행 전에 이미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해고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업원의 재배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퇴직종업원과 정부부문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순조로운 청산진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기업청산 시 노동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급여, 잔업수당, 사회보험료, 장애보상금

및 경제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 청산시 기업은 영업중지하고 청산기간 동안의 청산 비용만 청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산개시와 동시에 기업은 모든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청산업무의 필요로 회계직원 및 경비인원을 계속 채용해야할 경우 기업의 청산조에서 청산보조인원으로 고용(노무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비용을 청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노동문제 해결 시 실무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난으로 직원급여 및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중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노동중재심리에 충분히 협조한다.

둘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파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출소나 노동국에 협조 하에 처리한다.

셋째, 노동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예상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개별 노동자와 협의로 처리한다.

제 4 장 청산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 1 절 청산관련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산행정절차는 회사의 설립 당시 등기 또는 신고한 모든 정부부문에서 말소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행정절차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1. 심사비준기관의 업무처리 회피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외국인의 중국투자자와 관련된 심사비준 기구는 설립비준과 함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비준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을 비준한 동일한 기관에서 기업해산 및 청산을 심사비준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 자세는 외자유치(법인설립) 과정에서 보여줬던 적극성과 열의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외자유치 실적은 공적으로 인정받는 반면 철수실적은 그 반대이므로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는 탐탁치 않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외자유치 장려정책을 펼쳐 온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실적 중심주의로 인하여 유치업무에 비해 청산관련 업무는 기피하거나 무관심한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심하다. 법률규정상 심사비준기관(상무부문)은 기업이 해산(청산)을 신청하면 각급 지방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진 처리기한 내에 회답(비복)문건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산둥성 청도시 <外商投資企業終止審批指引>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5 개 업무일이 심비기한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 요구, 자료보완 요구로 이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기업해산 및 청산관련 법규에 대한 지방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기업해산 신청 심사비준과정에서 청산대상 기업이 청산을 진행해도 좋은지 주요 행정기관인 세관, 노동국, 세무국, 외환국, 재정국, 공안국 등으로부터 정리해야 할 사무에 대해 예비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술한 요구는 아무런 법률

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행정부문 공무원의 책임회피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부분의 기업들은 회사정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산절차가 개시된 초기의 혼란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화적, 제도적 차이가 심한 중국에서 청산관련 법제에 익숙하지도 않은 공무원을 상대로 까다로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까닭으로 실제로 청산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심사비준을 통과해야 하는 법적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청산개시일을 고치거나 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판시[關係]’를 동원하여 기어이 비준을 받아내는 등 비 법률적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심사비준 과정에서 보충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보충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심사비준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은 多級多層次의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각종각양의 상이한 등급, 상이한 효력의 법률 및 규정은 상이한 입법주체들이 제정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이들 법규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법 집행기관 즉 일선 행정기관 의 재량권이 우선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3. 청산완료 기한에 대한 법규의 부재

자체청산 시 청산완료기한에 대하여 현행법규상 규정이 없으며, 기업의 재산이나 채권 채무의 처리 및 세무처리 상황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다. 청산관련 업무처리 기한과 관련된 법규는 이미 폐지된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의 내용이 유일하며, 동<방법>에 의하면 기업의 청산기한은 청산시작일로부터 180 일을 넘기지 못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1 회에 한해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회사법>과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서는 최종 청산기한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모두 관련 행정부문의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

한편, 법원에 의한 강제청산일 경우에는 청산조 성립일로부터 180 일 내에 청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미완료 시 법원에 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4. 각종 행정부문 담당자의 업무처리 경험 및 능력 부족

대부분의 지방정부 심사비준기관의 공무원은 청산관련 업무경험부족으로 민원인의 질의에 제대로 응답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말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무, 외환, 세관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도 청산과 관련한 법률 상식이 부족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뒤따르지 않아 불편이 따른다. 청산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담당자가 오히려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의 의지를 꺾는 사례도 존재한다.

제 2 절 청산진행 실무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

1. 대량감원의 어려움

청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량경영을 통하여 손실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하는데, 직원의 대량 감축 시에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직원전원에게 사전 설명과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인력감원 방안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직원들의 집단 반발과 실력행사로 사전에 사업정리 사실을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노동행정부문에서 재취업 등 직원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력이 거세다.

2. 공장 임대인과의 계약분쟁

공장을 임차하여 중국법인을 경영한 경우, 장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회사정리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중국 투자 초기에 체결된 공장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소홀히 취급한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의 대 중국진출 초기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는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까닭으로 계약주체, 계약조건 등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문건으로 작성되어 중도 해지 시 임대인에게 무조건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체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경영난에 봉착하여 부득이하게 임차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 또는 한국 투자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며, 원부자재, 제품, 설비를 불법 점유하거나 공장 출입문을 아예 폐쇄하기도 한다.

3. 기업 소유의 토지 및 공장 매각의 어려움

토지사용권을 유상취득(出讓 또는 轉讓)하여 자가 공장을 건설한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자산을 환수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실수요자 물색이 어려워 철수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현재 중국의 토지가격은 지방정부의 헐값 出讓을 금지하고 중앙정부에서 기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과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시에 취득한 토지가격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는 최근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곳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철수기업의 공장을 매각하려 해도 시가에 맞춰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4. 내부 관리직원의 비협조 또는 고발 위험

회사가 어려워진 틈을 타서 내부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확대되어 경영진의 지시를 듣지 않거나, 회사재산을 미리 빼돌리기도 한다. 회사가 경영난에 봉착한 경우 경영정보 접근성이 뛰어난 내부 관리직원들 중에는 쌓여있던 불만의 표현이나 해고에 대한 보상금 요구 등을 이유로 경영진을 협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사업정리를 원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계자료가 부실한 편이며, 경영기간 중 세무기관에 신고한 자료와 실제 기업정황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중국인 직원은 회사 내부자료를 모아 두었다가 세무당국에 고발한다고 하면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면세설비의 불법 매각 또는 이동, 면세자재의 불법 내수판매 등의 행위는 이들 불량 내부직원에게는 아주 유용한 협박수단이 된다. 한국인 중에서도 일부 불만세력은 회사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중국에서의 자립기반 지원을 요구하면서 어제의 측근이 탈세 고발자가 되어 경영진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다.

5. 파산청산 진행시 회계자료 부실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려움

채무 누증으로 인하여 부득이 파산청산을 진행하게 될 때에도 그 동안의 왜곡된 회계 처리가 원활한 행정절차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사업정리 대상기업의 투자자가 한국 내 상장회사거나 코스닥 등록기업인 경우 한국 본사의 투자주식 평가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중국법인의 결산내용을 분식 왜곡한 경우도 있다. 비상장 투자자일지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회수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중국 현지법인의 결산 시에 분식행위를 한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중국 법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중국 공인회계사가 서명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신청수리 여부를 판단하므로, 회계자료의 부실에 대한 소명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 있다. 중국 공인회계사는 평소 기업의 요구에 협조를 잘 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노출되는 상황 하에서는 태도가 돌변하고, 회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게 회계오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6. 합자기업 중국 파트너의 비협조에 따른 청산 곤란

중외합자기업은 회사정리가 동사회 만장일치 결의사항이므로 한국측 투자자만의 의지로는 사업정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 합작파트너는 자신이 투자한 원금과 기회비용을 요구하기도하며, 실현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내걸어 한국투자자가 지칠 때 까지 기다렸다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들이 헐 값으로 구매하거나 무단활용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만약 청산을 강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제 5 장 청산사례분석

중국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인 청산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밟아가기에는 난관이 너무나 많다. 조세우대혜택의 전제 조건 등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거나 임차공장의 원상회복요구와 잔여 임차기간에 대한 배상금요구, 직원에 대한 경제보상금과 미납 사회보험료의 추가납부, 세무국의 세무조사 부담 등 잠재적인 청산비용은 기업경영이 어려워 청산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식 청산절차는 물론 정식 청산절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사례들을 소개하여 중국사업철수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참조가 되어 순탄한 사업철수가 진행될 수 있게 하고 또한, 현재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타산지석의 사례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제 1 절 성공사례

1. 산둥성 A 전자부품회사

(1) 중국진출 및 사업철수 배경

회사는 한국에서 기술력을 자랑하는 전자부품(컨텐츠) 제조업체였으나 90년대 이후 국내 대형 전자회사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함.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가전회사로의 공급뿐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중국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고, 2001년 산둥성에 중국인 개인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법인을 설립하여 가공무역과 내수판매 병행하였음.

그러나, 진출초기부터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억제 정책이 강화되고, 생산직 임금 상승, 임대료 인상 등 중국 현지에서의 공장가동 환경이 당초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고, 적자폭은 점점 확대되었음. 결국 회사는 2006년 말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청산을 시작하게 되었음.

2006년도 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회사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으며, 납입자본금 830만

위안 중 400만 위안 자본잠식 상태임.

구분	금액
자산총계	450만 위안
부채총계	20만 위안
자본총계	430만 위안

(2)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주된 문제점과 해법결과

[청산실행 인력의 부재]

철수전략을 수립할만한 내부인력은 물론 청산업무를 장기간 담당해야 할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철수 기본전략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구의 자문을 받아 일반 청산의 방법으로 진행함.

[임대기간 미종료]

공장임대차 계약 중 잔여기간이 아직도 4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으로 임대차계약서에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있음. 이에 계약서 조항에 의거 중도해지를 EMS로 통보하였고 경영난으로 인한 공장폐쇄이므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종업원 해고문제]

셋째, 생산직 사원 전원 해고에 따른 노동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고, 경제보상금 지불에 대한 부담이 있음. 공장 폐쇄일 직전에 정리해고 실시하고 노동계약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함으로써 노동분쟁 방지하였고 개별 통보 전에 관할 노동국에 신고절차를 진행함.

[면세설비 처리문제]

면세설비 중 일부가 세관의 사후감독 기간 중에 있으며 생산설비 중 일부는 한국 본사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임. 청산개시 전에 면세설비 중 일부는 한국 본사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세관에 무상 제공하였음. 그 외 잔여 중고설비는 폐기처리 함.

[부실자산의 처리문제]

회계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430만 위안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산가치가 없는 중고설비와 재고자산이 대부분이었음. 공장 폐쇄일 까지 생산 가능한 부분을 제외

한 원부자재는 모두 한국으로 반송(Ship Back) 처리하여 수책의 핵소문제를 해결함.

(3) 시사점

투자진출과 마찬가지로 청산에도 전략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사전에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다. 면세설비의 처리나 가공무역용 면세 원재료는 세관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청산을 종료할 수 없으므로 청산개시 전에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파악과 해결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천진시 B 전자부품회사

(1) 중국진출 및 사업철수 배경

회사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립금속 업종으로 임금상승 및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0년 8월 천진에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였음.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 본사의 중계무역을 통해 동남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일부는 한국 소매시장으로 납품이 되어왔음.

그러나 진출 이후 중국 업체들의 덤핑 출하, 원자재 가격의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적자경영이 지속되어 왔고, 이에 회사는 동 사업을 사양산업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회사는 중국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파산청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현재 진행 중에 있음.

2007년도 기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으며, 납입자본금 2,600만 위안 중 1,600만 위안 자본잠식 상태임.

구분	금액
자산총계	3,400만 위안
부채총계	2,400만 위안
자본총계	1,000만 위안

(2)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주된 문제점

[부채상환불능 문제]

회사의 자산총계는 실제 자산가치에 비해 부풀려져 있으며,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상황으로 일반청산 불가능한 상태임.

[파산업무 전문가의 부족]

<기업파산법>의 개정이 오래되지 않았고, 중국 법원의 외상투자기업 파산 사건이 많지 않으며, 파산 전문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

[핵심직원의 이직]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짧은 기간 중 회계직원이 빈번하게 교체 되었고, 현재 회사 내에 재무관리 전문인원이 없음.

[임대료의 체납]

개발구 관리위원회에 대해 공장 임대료를 2년간 체납하고 있으며, 자재비 미납 등으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음. 또한 생산직 직원의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임.

(3) 사업철수과정과 문제점 해법결과

사업철수 방법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기본전략을 수립함.

[철수방법의 선택]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파산청산을 진행하기로 함. 만약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전략을 수정하여 구조조정 또는 화해를 시도할 계획임.

[인원정리]

파산선고 시까지 생산을 지속하면서 점진적 축소해 나감. 또한, 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지급함.

[자산처리]

파산 관재인의 지휘 하에 채무조정

기타의 행정적인 절차는 기업파산법에 따라 회사정리 진행하였고 파산청산 절차에 따른 기본 일정계획은 다음과 같음.

주요 진행사항	소요일	비 고
---------	-----	-----

파산신청 전 준비절차 수행	30일	전략수립 포함
회계감사 실시	15일	법원 제출용
신청서류 준비	25일	중국 변호사
파산신청 및 수리	15일	인민법원
관리인 파견	10일	
신문공고	25일	신청일 기준

(4) 시사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일반청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도 법원의 파산청산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철수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3. 산동성 C 소품회사

(1) 회사개황

구분	내용
업종	목재소품제조
종업원수	250 명
매출액규모	연간 5 백만불 수출
주책자본금	US\$2,000,000
투자자	한국인 100%투자
조세우대혜택	2 년면제 3 년반감
경영기간	6 년
공장 임대기간	5 년 임대

(2)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주된 문제점

설립 후 6 년간 사업을 수행하던 중 채산성 악화로 청산을 하기로 하였으나 10 년 경영기간 미충족으로 과거 향유했던 조세우대혜택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부딪힘.

(3) 해법결과와 준비과정

한국인 투자자는 약 6 개월의 준비 끝에 협력업체 중 성실하게 납품을 하고 있는 중국인 왕사장에게 기업인수를 제안하여 한국인 생산담당자가 상주하여 인수 후에도 1 년

간 생산 및 기술지도를 한다는 조건으로 성사시킴. 단, 투자자는 한국인 명의로 지속하고 법인대표는 중국인 왕사장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므로 4년의 잔여기간 충족 문제를 해결함.

하청기업 왕사장이 그 동안 수년간의 거래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자세로 볼 때 인수자로서 적격하다는 판단을 한 후 왕사장이 인수 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함.

[미지급금의 해소]

경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인수시점인 2007년 12월말의 미지급금이 거의 없도록 조정함.

[공장의 이전]

왕사장은 본인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차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인인 촌 서기에게 협조를 부탁함. 촌서기는 난색을 표하였으나 초상국 중국 전직 관리의 도움을 받아 1개월 치의 임대료와 C기업이 자비로 신축한 종업원 기숙사동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함.

(4) 시사점

C기업 사례의 경우 한국인 투자자가 인수자인 왕사장의 입장에서 인수 후에도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미지급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술이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 성사될 수 있었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이다.

4. 산동성 D 전자부품회사

(1) 회사의 개황

구분	내용
업종	전자부품제조
종업원수	100명
매출액규모	연간 6백만불 진료가공 수출

투자자	한국모회사 100%투자
조세우대혜택	장기간 결손으로 조세감면혜택 받은 바 없음
경영기간	7 년간 경영
생산설비	5 년의 세관의 관리기간 경과함
임대기간	임대기간 20 년

(2)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주된 문제점

주거래처의 도산과 채산성 악화로 공장 철수를 하여야 하나 종업원의 재배치문제와 잔여기간 임대료 보상요구가 예상됨.

(3) 해법결과와 준비과정

종업원에게 조업중단의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자 종업들이 자진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함. 임대인에게는 1 년치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청산 절차를 개시함.

[수출용원부자재의 해소]

진료가공으로 수입한 수출용원부자재의 미사용분은 본사로 반송하거나 이관하여 세관의 규정 위배가 없도록 함.

[종업원재배치]

종업원들에게는 회사의 사정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여 계속 잔류하여도 무방하나 조업을 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잔류하는 경우 기본급만 지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고 사직하는 경우는 1 개월치 경제보상금을 지급함. 약 6 개월에 걸쳐 종업원들이 새로운 직장을 스스로 찾아 이직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는 조업 중단한 상태에서도 출근 직원에게 기본급을 지급함.

[임대료 보상]

한국 출장 후 또는 명절 등에 총경리가 임대인을 찾아가 식사를 대접하거나 임대인 부인의 선물을 준비하는 등 6 개월 이상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한 후 회사 사정을 설명하여 합의를 이룸.

(4) 시사점

D 기업 역시 종업원과 임대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제보상금 지급과 1 년치의 임대료 보상등 성실한 자세를 보임으로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 또한 철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되 일방적인 이득만을 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 즉, 철수로 인한 쌍방의 손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북경시 E 광고회사

(1) 회사개황

회사는 2007 년 8 월 중국 로컬기업과 상장회사인 한국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중외합자기업으로 광고설계, 발표 및 경영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임. 등록자본금은 RMB 172.9 만 위안으로 중국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함. 이 회사의 법정대표는 중국 투자자가 지정한 사람이 담임하였고 경영기한은 8 년임. 회사의 소재지는 중국 투자자의 주소지 내에 있는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

회사는 북경 올림픽을 겨냥하여 광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당초 예측과 달리 광고 입찰 참여기회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사실상 회사 설립 이후 어떠한 경영활동도 전개하지 못함. 광고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 지출만 계속되자 회사는 심각한 자금압박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또한 경영목적 달성불가가 확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사업유지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투자자는 사업철수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를 중국 파트너와 협의함.

(2)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주된 문제점

[고의적인 청산업무 지연]

중국 투자자는 한국 투자자의 해산청산 제의를 받고 원칙적으로는 청산에 동의하면서도 청산 실무 진행을 위한 서류 작성과 서명날인, 유관 서류 준비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실질적으로는 청산진행을 어렵게 함.

[불투명한 자금사용과 회계처리 미흡]

중국 파트너가 분담하던 회사의 자금사용과 기록, 회계처리 분야에서 RMB 50 만 위안

이 넘는 금액이 불투명한 사용과 회계증빙 부재로 인해 쌍방간 이견이 발생함. 이에 대하여 한국 투자자의 설명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었으나, 중국 투자자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잘 모르겠다”, “회계증빙이 없어서 그렇다. 증빙 구해서 처리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로 계속 대응함.

[행정문건의 분실]

중국 투자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합자기업에 대한 일부 중요한 행정 등기문건이 분실되었고, 중국 투자자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청산업무 진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어려움 발생이 예측되었음.

(3) 해법결과

한국 투자자는 상술한 문제점에 직면하여 청산진행이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되자 합자기업의 청산에 따른 이해득실을 다시 점검함. 결과적으로 청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회수할 청산 잔여재산이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보다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중국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함.

그러나 해산청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청산 관련 비용이 상당금액 발생하고, 청산완료까지 약 1 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한국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에게 한국 투자자가 합자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0%를 무상으로 양수받을 의향이 있는 지를 확인하였고, 중국 투자자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해산청산이 아닌 지분양도의 방법으로 중국사업을 철수하게 되었음.

(4) 준비과정

한국 투자자는 사실상 존속의 의미가 없는 합자기업을 중국 투자자가 인수하도록 유도해야 했음. 이에 중국 투자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RMB 50 만 위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한국 투자자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합자기업을 중국 로컬기업으로 전환한 후 광고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는 서면문건을 발송함. 중국 투자자는 해당 문건을 수취하고 최종적으로 한국 투자자 보유 지분의 전체 양수에 동의하되 되었음.

(5) 시사점

이 사례는 사업철수에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투자자의 사업철수 목적은 청산 잔여재산의 회수가 아니라 중국사업을 최단 시간 내에 정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회사로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중국 투자자를 설득하여 해산청산이 아닌 지분양도의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 투자자의 손실 최소화와 신속한 철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6.북경시 F 캐피탈 대표처

(1) 대표처 개황

한국의 F 캐피탈은 2007 년 10 월 북경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대표처를 설치하였고, 시장조사, 본사와의 연락업무, 자문업무 등 비영리적 업무를 전개함. 대표처에는 한국 본사에서 파견한 한국인 수석대표 1 명과 중국인 직원 1 명이 근무하였음.

2008 년 하반기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 본사가 비영리 해외지사 또는 법인의 폐쇄를 결정하였고, 2009 년 초 북경대표처 폐쇄업무를 시작하게 됨.

(2)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주된 문제점

[폐쇄를 위한 허가 취득]

해외 금융기구가 대표처를 설치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관 정부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북경대표처의 폐쇄를 위해서는 북경시 은행업감독관리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폐쇄 허가를 취득해야함. 문제는 최종 폐쇄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약 6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것과 정부기관의 심사 경과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음. 실제로 북경대표처는 2009 년 3 월 폐쇄신청 문건을 제출하여 6 개월이 경과한 9 월에 비로소 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심사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음.

[수석대표의 개인소득세 정산]

한국인 수석대표의 급여는 한국본사에서 지불하고, 대표처가 개인소득세를 대리징수하여 북경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음. 그러나 북경 세무당국에서 수석대

표의 개인소득세 정산과정에서 대표의 급여소득에 관한 한국 세무당국의 “세금완납증명” 제출을 요구하였음. 문제는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식에는 북경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또한 대표의 실제 급여를 다소 축소하여 북경 세무당국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한국본사의 급여내역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 중국 경내에서 개인소득세 추가 납부 위험이 생길 수 있음.

(3) 해법결과

[폐쇄허가 취득]

폐쇄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신속한 심사 경과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북경시 은감국 등 유관 정부 담당자와의 유선 연락을 유지하였고 정부기관의 서류 보완 요청이나 설명요구 등에 빠르게 대응하여 시간단축 노력을 기울였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남짓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폐쇄 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음.

[수석대표 개인소득세 정산]

대표처 전담 세무직원과 지속적인 대화 및 설득을 통해 대표에 대한 세금완납증명 제출 불가를 확인 받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소득세 납부 없이 정산을 마무리하고 세무등기 말소를 진행할 수 있었음.

(4) 준비과정

대표처 폐쇄와 관련하여 본사 또는 북경 주재 대표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낭비요소가 있고, 또한 중국 현실에 맞는 폐쇄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북경에 소재하는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전문컨설팅 업체에 다시 위탁하여 폐쇄업무를 진행함.

폐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처 관련 자료를 모두 컨설팅 업체가 보관 및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또한 대표처 폐쇄 허가 기간 동안의 수석대표 개인소득세 납부 및 각종 세무신고 대행도 현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함.

현지 컨설팅 업체는 폐쇄 허가 취득, 수석대표의 개인소득세 정산, 한국 본사 사명 변경에 따른 공상등기 변경 등 중요한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과감하게 별도 대행기구 추가 활용, 정부기관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서면자료 준비 및 담당자 대면 설명 등

의 방법으로 대응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본사가 대행 업체에게 부여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5) 시사점

첫째, 제조업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한국 본사의 주종 대표처는 정부기관의 허가 없이 폐쇄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처 설치와 폐쇄가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처는 폐쇄를 위한 허가 필요성, 절차,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둘째, 대표처 폐쇄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사항은 바로 외국 국적 대표의 개인소득세 정산문제이다. 대개의 경우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중국 세무당국이 이를 지적하여 추가 납세를 요구하고 있다. 폐쇄 시점에서 개인소득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처 존속기간에 적정수준 또는 사실 그대로 급여를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종 정산시점에서 중국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논리적 설명을 통해 세무직원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 2 절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기업 청산의 특징

1. 청산사례의 회소성

최근 중국에서 경영난, 현지적응 실패로 사업포기 업체가 급증하였고 앞으로도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중국관련 로펌, 컨설팅회사, 중국전문 포털, 공공기관 및 중국 현지 로펌, 정부기관 웹 사이트 등의 상담코너에는 사업철수와 관련된 질문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산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는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원인은 청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거나 현지 근무자들의 이직으로 인해 관련 정보가 수집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기관에 청산보고가 접수된 사례는 많지 않고,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청산에 대한 법률 기초상식 결여

1990년대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률상식이 극히 취약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진출 러시에 비해 자문기구가 절대 부족하였으며, 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정보제공 창구가 적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합자기업의 경우 동사회 만장일치 조항이 있어서 분쟁 발생시에도 철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한국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기한이 존재하므로 기한 종료 시에는 자동적으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투자 의사결정 후 정관 제정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법인설립 문건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법인에 대해 투자자는 유한책임을 진다는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법률상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민사채무에 대해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며, 투자자는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절대 다수 중국법인의 기업 정체성은 유한

책임회사이며, 중국의 유한책임회사는 한국의 주식회사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합법적 청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청산을 진행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에는 파산청산을 진행할 수 있다.

3. 청산절차의 복잡성과 지방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법률 규정과는 달리 청산신청에 대한 초보답변(批復) 과정에서 노동국, 세무국, 세관, 외환관리국 등 유관부분으로부터 예비검토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관련법규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처리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즉, 각 부서가 청산안전에 대한 책임을 서로 회피하려 함에 따라 청산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지는 주요원인이 된다.

4. 청산절차 진행으로 야기될 잠재적 비용에 대한 불안감

(1) 세제 우대혜택 반납에 대한 불안감 팽배

제조업체로서 2년 면제 3년 50% 감세의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10년 이내에 철수하면 그 동안 받아왔던 감면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설비도입 과정에서 받은 관세 및 수입증치세 면제혜택이 취소되어 면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기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우대정책의 취소로 기업에 우발적인 피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2) 장기간 진행되고 복잡하기만 한 중국의 청산절차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시간 및 비용 소요측면에서 청산절차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보다 복잡하고 귀찮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며, 사업 포기시점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장기간 담당자를 배치하고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인식한다.

청산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벌금이 나올 것도 같고 기타 책임자에 대한 인신구속과 같은 예상치 못한 제재조치가 뒤 따를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존재한다.

정상적인 청산에 대한 중국 공무원들의 비호의적 태도와 관련 지식 미흡, 경험부족으로 인해 청산이 업체가 파악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 규정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 청산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예상한다.

(3) 미상환 채무에 대하여 한국 투자자가 대신 갚아야 하거나 못 갚을 경우 형사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회계처리, 세무신고 부분과 면세자산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있을 것 같은 염려가 있다. 또한, 중국법인의 미변제 채무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 있을 것 같은 우려와 임대료, 원자재매입 등 영업채무 미변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체납 등 경상비용 미지급에 대한 걱정이 있다.

5. 투자계획 수립 시 출구전략에 대한 인식이 없음

다른 외국에 투자하는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들의 준비가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자를 실행하면서도 사업철수 기준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선불리 투자가 실행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진출 방식과 사업전개 수단을 궁극적인 진출목적과 혼동함으로써 사업계획이 없거나 있더라도 치밀하지 못하여 손익분기점(BEP) 도달시기가 대폭 지연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후 비로소 사업철수를 고려하면서도 적절한 철수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전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다.

6. 임대계약 중도해지와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

공장주인과 체결한 장기 임대차계약에서 중도 해지 시 공장폐쇄나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자들에 의한 감금 등 폭력행사가 예상되어 한국 주재원들이 신체적 위험을 느껴 현지에서 잠적해 버리거나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7. 투자자 및 현지법인 책임자의 자포자기

투자자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거나, 관리 책임자의 이탈로 현지 수습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회계와 무역 등 핵심직원들이 미리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청산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또는 중국에서의 청산업무를 믿고 맡길만한 전문대리기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본사의 부실로 인하여 중국사업이 동반 부실화 된 경우에는 한국 본사의 난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매달림에 따라 사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2~3년 뒤 영업집조(營業執照)이 자동 말소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청산된다고 오관하여 현지법인을 ‘방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투자자인 한국본사가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합법적 정리를 선택하려는 의지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본사의 회계 및 세무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정상적 방법 탐색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한국본사의 지분법 평가문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문제 등이 있다. 또한 상장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불법행위로 귀착되는 것을 피하려 하는 한편 한국인 파견 주재원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개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부록] 중국에서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한 주요 법규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해산 및 청산관련 법률조항

제10장 회사의 해산 및 청산

第十章 公司解散和清算

제181조 회사는 아래의 원인으로 해산된다.

第一百八十一条 公司因下列原因解散:

- (1) 회사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2)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의결했을 경우
- (3) 회사가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할 경우
- (4) 영업집조가 법에 의거하여 말소 또는 취소되었거나 폐쇄명령을 받았을 경우
- (5) 인민법원이 본 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시켰을 경우.

- (一) 公司章程规定的营业期限届满或者公司章程规定的其他解散事由出现;
- (二) 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解散;
- (三) 因公司合并或者分立需要解散;
- (四) 依法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或者被撤销;
- (五) 人民法院依照本法第一百八十三条的规定予以解散。

제182조 회사가 본 법 제181조 제1호의 상황에 해당될 경우 회사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존속할 수 있다.

第一百八十二条 公司有本法第一百八十一条第(一)项情形的,可以通过修改公司章程而存续。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관을 개정할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3분의 2 이상 표결권을 가진 주주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지한 표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되어야 한다.

依照前款规定修改公司章程,有限责任公司须经持有三分之二以上表决权的股东通过,股份有限公司须经出席股东大会会议的股东所持表决权的三分之二以上通过。

제183조 회사의 경영관리가 심각한 어려

第一百八十三条 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

음에 봉착하여 계속 존속하여도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소실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타 채널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전체 주주의 10% 이상 표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4조 회사가 본 법 제181조 제1, 2호, 제4, 5호의 규정에 따라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출현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조는 주주들로 구성하며 주식유한회사의 청산조는 동사 또는 주주총회에서确定的 인선으로 구성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서 관련자를 지정하여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아울러 즉시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185조 청산조는 청산기간에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 (1)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
- (2)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 (3) 청산과 관계되는 회사의 미완료업무 처리
- (4) 채납세금과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
- (5) 채권, 채무를 정리

难, 继续存续会使股东利益受到重大损失, 通过其他途径不能解决的, 持有公司全部股东表决权百分之十以上的股东, 可以请求人民法院解散公司。

第一百八十四条 公司因本法第一百八十一条第(一)项、第(二)项、第(四)项、第(五)项规定而解散的, 应当在解散事由出现之日起十五日内成立清算组, 开始清算。有限责任公司的清算组由股东组成, 股份有限公司的清算组由董事或者股东大会确定的人员组成。逾期不成立清算组进行清算的, 债权人可以申请人民法院指定有关人员组成清算组进行清算。人民法院应当受理该申请, 并及时组织清算组进行清算。

第一百八十五条 清算组在清算期间行使下列职权:

- (一) 清理公司财产, 分别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
- (二) 通知、公告债权人;
- (三) 处理与清算有关的公司未了结的业务;
- (四) 清缴所欠税款以及清算过程中产生的税款;
- (五) 清理债权、债务;
- (六) 处理公司清偿债务后的剩余财产;

(6) 채무 상환 후 회사의 잔여재산 처리
(7)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활동에 참여.

제186조 청산조는 설립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동시에 60일 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청산조에 그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함에 있어서 채권의 관련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조는 채권을 등기해야 한다.

채권 신고기간에 청산조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87조 청산조는 회사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하여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재산으로 청산비용과 종업원 임금, 노동보험료, 법정보상금을 지불하고 채납세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채무를 상환한 후의 잔여재산은,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七) 代表公司参与民事诉讼活动。

第一百八十六条 清算组应当自成立之日起十日内通知债权人,并于六十日内在报纸上公告。债权人应当自接到通知书之日起三十日内,未接到通知书的自公告之日起四十五日内,向清算组申报其债权。

债权人申报债权,应当说明债权的有关事项,并提供证明材料。清算组应当对债权进行登记。

在申报债权期间,清算组不得对债权人进行清偿。

第一百八十七条 清算组在清理公司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后,应当制定清算方案,并报股东会、股东大会或者人民法院确认。

公司财产在分别支付清算费用、职工的工资、社会保险费用和法定补偿金,缴纳所欠税款,清偿公司债务后的剩余财产,有限责任公司按照股东的出资比例分配,股份有限公司按照股东持有的股份比例分配。

청산기간에는 회사가 존속하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전개하지 못한다. 회사의 재산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하기 전에는 주주에게 배당하지 못한다.

제188조 청산조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재산으로 채무 상황이 불가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가 인민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한 후 청산조는 청산업무를 인민법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89조 회사의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조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회사 등록기관에 보고하고 회사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회사의 종결을 공고해야 한다.

제190조 청산조의 구성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청산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청산조의 구성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이나 기타 탈법적 수입을 수취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재산을 점유해서는 아니 된다.

청산조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손실을

清算期间, 公司存续, 但不得开展与清算无关的经营活动。公司财产在未依照前款规定清偿前, 不得分配给股东。

第一百八十八条 清算组在清理公司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后, 发现公司财产不足清偿债务的, 应当依法向人民法院申请宣告破产。

公司经人民法院裁定宣告破产后, 清算组应当将清算事务移交给人民法院。

第一百八十九条 公司清算结束后, 清算组应当制作清算报告, 报股东会、股东大会或者人民法院确认, 并报送公司登记机关, 申请注销公司登记, 公告公司终止。

第一百九十条 清算组成员应当忠于职守, 依法履行清算义务。

清算组成员不得利用职权收受贿赂或者其他非法收入, 不得侵占公司财产。

清算组成员因故意或者重大过失给公司或者债权人造成损失的, 应当承担赔偿责任。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91조 회사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에는 기업파산에 대한 법률에 따라 파산청산을 실시해야 한다.

第一百九十一条 公司被依法宣告破产的，依照有关企业破产的法律实施破产清算。

2.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청산 관련 조항

제72조 외자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해야 한다.

- (1) 경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4) 파산의 경우
- (5) 중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전항의 제(2), (3), (4)호에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이 비준한 일자가 바로 기업의 중지일이다.

제73조 외자기업이 이 실시세칙 제72조 제(1), (2), (3), (6)호의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에는 중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에 공고하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중지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절차, 원칙, 청산조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여 심사 비준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고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

第七十二条 外资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应予终止:

- (一) 经营期限届满;
- (二) 经营不善,严重亏损,外国投资者决定解散;
- (三) 因自然灾害、战争等不可抗力而遭受严重损失,无法继续经营;
- (四) 破产;
- (五) 违反中国法律、法规,危害社会公共利益被依法撤销;
- (六) 外资企业章程规定的其他解散事由已经出现。

外资企业如存在前款第(二)、(三)、(四)项所列情形,应当自行提交终止申请书,报审批机关核准。审批机关作出核准的日期为企业的终止日期。

第七十三条 外资企业依照本实施细则第七十二条第(一)、(二)、(三)、(六)项的规定终止的,应当在终止之日起15天内对外公告并通知债权人,并在终止公告发出之日起15天内,提出清算程序、原则和清算委员会人选,报审批机关审核后清算。

제74조 청산조는 외자기업 법정대표자, 채권자 대표 및 관련 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산비용은 외자기업의 잔존 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75조 청산조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채권자회의 소집
- (2) 기업재산을 인수 및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작성
-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 (4) 청산방안 제정
- (5) 채권회수 및 채무상환
- (6) 주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회수
- (7) 잉여재산 분배
-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혹은 응소.

제76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해 기업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난 후 그 순자산금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한 부분을 이윤으로 간주하며 중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7조 외자기업은 청산 완료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하고 영

第七十四条 清算委员会应当由外资企业的法定代表人、债权人代表以及有关主管机关的代表组成，并聘请中国的注册会计师、律师等参加。

清算费用从外资企业现存财产中优先支付。

第七十五条 清算委员会行使下列职权：

- (一) 召集债权人会议；
- (二) 接管并清理企业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目录；
- (三) 提出财产作价和计算依据；
- (四) 制定清算方案；
- (五) 收回债权和清偿债务；
- (六) 追回股东应缴而未缴的款项；
- (七) 分配剩余财产；
- (八) 代表外资企业起诉和应诉。

第七十六条 外资企业在清算结束之前，外国投资者不得将该企业的资金汇出或者携出中国境外，不得自行处理企业的财产。

外资企业清算结束，其资产净额和剩余财产超过注册资本的部分视同利润，应当依照中国税法缴纳所得税。

第七十七条 外资企业清算结束，应当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手续，缴销营业执

업집조를 반납 및 폐기해야 한다.

照。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第七十八条 外资企业清算处理财产时,在同等条件下,中国的企业或者其他经济组织有优先购买权。

제79조 외자기업이 본 실시세칙 제7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종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참조하여 청산한다.

第七十九条 外资企业依照本实施细则第七十二条第(四)项的规定终止的,参照中国有关法律、法规进行清算。

외자기업이 본 실시세칙 제7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종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外资企业依照本实施细则第七十二条第(五)项的规定终止的,依照中国有关规定进行清算。

3.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 청산 관련 조항

제90조 합영기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산한다.

- (1) 합영기간이 만료한 경우
- (2) 기업에 중대한 결손이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합영의 일방이 합영기업의 협정, 계약,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자연재해, 전쟁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5) 합영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또한 전망이 없는 경우
- (6) 합영기업의 계약,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2), (4), (5), (6)호의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동사회가 해산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비준기관의 심사를 받으며 제(3)호의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이행한 일방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상기 제1항 제(3)호의 경우 합영기업의 협정, 계약, 정관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방의 당사자는 이에 의한 합영기업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1조 합영기업이 해산을 선언하는 때에

第九十条 合营企业在下列情况下解散:

- (一) 合营期限届满;
- (二) 企业发生严重亏损, 无力继续经营;
- (三) 合营一方不履行合营企业协议、合同、章程规定的义务, 致使企业无法继续经营;
- (四) 因自然灾害、战争等不可抗力遭受严重损失, 无法继续经营;
- (五) 合营企业未达到其经营目的, 同时又无发展前途;
- (六) 合营企业合同、章程所规定的其他解散原因已经出现。

前款第(二)、(四)、(五)、(六)项情况发生的, 由董事会提出解散申请书, 报审批机构批准; 第(三)项情况发生的, 由履行合 s 同的一方提出申请, 报审批机构批准。

在本条第一款第(三)项情况下, 不履行合营企业协议、合同、章程规定的义务一方, 应当对合营企业由此造成的损失负赔偿责任。

第九十一条 合营企业宣告解散时, 应当进行

는 청산을 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외국 투자기업 청산방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조를 구성하여야 하며 청산조에서 청산 사항을 책임진다.

제92조 청산조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의 동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동사가 청산조의 구성원을 담임할 수 없거나, 담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의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초빙하여 담임하게 할 수 있다. 심사 비준기관은 필요한 경우 유관 담당자를 파견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청산비용 및 청산조 구성원의 노동보수는 합영기업의 현존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3조 청산조의 임무는 합영기업의 재산, 채권, 채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평가와 산출의 근거를 제출하고 청산 방안을 제정하고, 동사회에 보고하고 확인 받은 후에 집행하는 것이다.

청산기간중 청산조는 당해 합영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및 응소한다.

제94조 합영기업은 전부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합영기업은 채무를 변제한 후의 잉여재산을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합영기업의 협정, 계약,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

清算。合营企业应当按照《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的规定成立清算委员会，由清算委员会负责清算事宜。

第九十二条 清算委员会的成员一般应当在合营企业的董事中选任。董事不能担任或者不适合担任清算委员会成员时，合营企业可以聘请中国的注册会计师、律师担任。审批机构认为必要时，可以派人进行监督。

清算费用和清算委员会成员的酬劳应当从合营企业现存财产中优先支付。

第九十三条 清算委员会的任务是对合营企业的财产、债权、债务进行全面清查，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目录，提出财产作价和计算依据，制定清算方案，提请董事会会议通过后执行。

清算期间，清算委员会代表该合营企业起诉和应诉。

第九十四条 合营企业以其全部资产对其债务承担责任。合营企业清偿债务后的剩余财产按照合营各方的出资比例进行分配，但合营企业协议、合同、章程另有规定的除外。

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영기업이 해산할 때 그 자산순액 또는 잉여 재산 중 기업의 미분배 이윤, 각종 기금과 청산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실제로 납부한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이익으로 간주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5조 합영기업의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조는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동사회의확인을 받은 후 심사 비준기구에 보고하며, 또한 기존 등록관리기구에서 등록말소 수속을 진행하고 영업집조를 반납한다.

제96조 합영기업이 해산된 후 제반 장부 및 서류는 중국 합영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合营企业解散时,其资产净额或者剩余财产减除企业未分配利润、各项基金和清算费用后的余额,超过实缴资本的部分为清算所得,应当依法缴纳所得税。

第九十五条 合营企业的清算工作结束后,由清算委员会提出清算结束报告,提请董事会会议通过后,报告审批机构,并向登记管理机构办理注销登记手续,缴销营业执照。

第九十六条 合营企业解散后,各项账册及文件应当由原中国合营者保存。

4. <중외합작기업법 실시세칙> 청산 관련 조항

제48조 합작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 (1) 합작기한 만료
- (2) 합작기업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계속 경영하기 어려울 경우
- (3) 중외합작자 일방 또는 다방이 합작기업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작기업을 계속 경영하기 어려울 경우
- (4) 합작기업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할 원인이 나타났을 경우
- (5) 합작기업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법에 의하여 경영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전항 제2호, 제4호에서 열거한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 합작기업의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전항 제3호에서 열거한 사항하에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외합작자 일방 또는 다방은 계약을 이행한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빚어진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을 이행한 일방 또는 다방은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제49조 합작기업의 청산사유는 국가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합작기업 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第四十八条 合作企业因下列情形之一出现时解散:

- (一) 合作期限届满;
- (二) 合作企业发生严重亏损, 或者因不可抗力遭受严重损失, 无力继续经营;
- (三) 中外合作者一方或者数方不履行合作企业合同、章程规定的义务, 致使合作企业无法继续经营;
- (四) 合作企业合同、章程中规定的其他解散原因已经出现;
- (五) 合作企业违反法律、行政法规, 被依法责令关闭。

前款第二项、第四项所列情形发生, 应当由合作企业的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做出决定, 报审查批准机关批准。在前款第三项所列情形下, 不履行合作企业合同、章程规定的义务的中外合作者一方或者数方, 应当对履行合同的他方因此遭受的损失承担赔偿责任; 履行合同的一方或者数方有权向审查批准机关提出申请, 解散合作企业。

第四十九条 合作企业的清算事宜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及合作企业合同、章程的规定办理。

5. 외상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업무 진행 관련 상무부 판공청의 지도의견

법에 따른 외상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관한 상무부
판공청의 지도 의견
상법자[2008]31호

商务部办公厅关于依法做好外商投资企业解散
和清算工作的指导意见
商法字[2008]31号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신강
생산 건설 병단 상무 주관 부문: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新疆生
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이하 《방법》 이
라고 함)은 1996년 시행 이후 외상투자기
업의 청산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법률
제도가 점진적으로 완벽해지고 있음에 따
라 내/외자기업의 관리를 일치시키기 위하
여 국무원은 2008년1월15일 해당 《방법》
을 폐지하였다. 《방법》을 폐지한 후 외상
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以下简称《办法》)
自1996年实施以来,对于保障外商投资企业清
算工作的顺利进行起到了积极作用。随着我国
法律制度的逐步完善,对内外资企业的管理趋
于一致,国务院于2008年1月15日废止了该《办
法》。现将《办法》废止后有关做好外商投资
企业解散和清算工作的意见通知如下:

1. 이후 외상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업무
는 반드시 회사법과 외상투자법률, 행정법
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외상투자법률과 행정법규에 특별규정이 있
으나 회사법에는 상세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一、今后外商投资企业的解散和清算工作应按
照公司法和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的相关规
定办理。外商投资法律和行政法规有特别规定
而公司法未做详细规定的,适用特别规定。

2. 외상투자기업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90조 제1항의 (2), (4), (5),
(6)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
48조 제1항의 (2), (4), (5)항, 혹은 《외자

二、外商投资企业根据《中外合资经营企业法
实施条例》第九十条第一款第(二)、(四)、
(五)、(六)项,《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
施细则》第四十八条第一款第(二)、(四)、

기업법실시세칙》 제72조 제1항의 (2), (3), (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지하는 경우에는 심의비준기관에 사전 해산신청서, 기업 권력기구(동사회,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이하 동일)의 기업 사전 해산에 관한 결의 및 기업의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중외합자, 합작기업 투자자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의 제90조 제1항 제(3)번 혹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8조 제1항 제(3)번의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이 해산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비준 기관에 사전 해산신청서를 보고 및 발송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서 발급한 효력이 있는 판결 또는 재결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결 또는 재결 문서에는 반드시 상술한 2개 항목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함이 확실하게 판정 또는 재결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비준 기관은 해산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수리한 후 10일 업무일 내에 기업 해산의 비준문건을 비준하여야 하고 전국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 관리시스템에 비준한 기업에 대한 해산 정보를 추가하여야 한다. 기업은 해산을 비준한 날부터 15일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의 일부 지분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3조 규정에 근거

(五)项, 或《外资企业法实施细则》第七十二条第一款第(二)、(三)、(六)项的规定终止的, 须向审批机关报送提前解散申请书、企业权力机构(董事会、股东会或股东大会, 下同)关于提前解散企业的决议以及企业的批准证书和营业执照。

中外合资、合作企业投资者按照《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第九十条第一款第(三)项或《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第四十八条第一款第(三)项的规定单方提出解散申请的, 应当向审批机关报送提前解散申请书, 并提供有管辖权的人民法院或仲裁机构作出的生效判决或裁决, 判决或裁决中应明确判定或裁定存在上述两项中所规定的情形。

审批机关收到解散申请书和相关材料后, 于10个工作日内作出批准企业解散的批件, 并在全国外商投资企业审批管理系统中增加批准企业解散的信息。企业应在批准解散之日起15日内成立清算组, 依法开始清算。

三、外商投资企业部分股东按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第一百八十三条规定请求解散公

하여 회사의 해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4. 청산조는 청산기간 동안 기업의 각 항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청산이 끝난 후, 청산조는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권력기구의 확인을 거친 후 심사비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심사비준 기관에 비준증서를 제출하여 취소시켜야 한다. 심사비준 기관은 청산 보고서와 비준증서를 받은 후 전국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 관리시스템에 기업 종결에 관한 관련 정보의 입력과 조작 작업을 완성하여야 하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통지서를 생성하도록 한다. 기업은 통지서를 지참하여 세무, 세관, 외환 등 부문에서 말소수속을 진행하고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취소 신청을 한다.

5. 《방법》이 폐지되기 전에 특별 청산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특별 청산 처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청산조에서 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청산 보고서는 법률 효력을 갖는다.

상무부 관공청
2008년 5월 5일

司的，应直接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出。

四、清算组应在清算期内缴清企业各项税款。清算结束后，清算组应制作清算报告，经企业权力机构确认后，报送审批机关，同时向审批机关缴销批准证书。审批机关收到清算报告和批准证书后，在全国外商投资企业审批管理系统中完成企业终止相关信息的录入和操作，并由系统自动生成回执，企业凭回执向税务、海关、外汇等部门办理注销手续，并向公司登记机关申请注销登记。

五、《办法》废止前，特别清算已经开始的，特别清算程序可继续进行，清算委员会依法作出的清算报告具有法律效力。

商务部办公厅
二〇〇八年五月五日

6. 공상국, 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 해산으로 인한 등기말소 관리 유관문제에 대한 통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의 외상투자
기업 해산으로 인한 등기말소 관리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
공상외기자[2008]226호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务部关于外商投
资企业解散注销登记管理有关问题的通知
工商外企字[2008]226号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부
성급시 공상행정관리국, 상무주관부문, 신
강생산건설병단

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副省级
市工商行政管理局、商务主管部门，新疆生产
建设兵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이하 <청산방법
>)이 국무원 516호령 <일부 행정법규 폐
지에 관한 결정>으로 이미 폐지되었다. <
청산방법> 폐지 이후의 외상투자기업 해
산, 청산, 말소의 법률 적용 원칙을 분명
하게 하고 해산 심의비준 및 등기말소 절
차를 규범화하며 외상투자기업의 퇴출 메
커니즘을 완벽히 하기 위하여 외상투자기
업 해산, 청산 및 등기말소 관리에 관한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
다: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以下简称《清算办
法》)已经国务院516号令《关于废止部分行政
法规的决定》予以废止。为了明确《清算办法》
废止后外商投资企业解散、清算、注销的法律
适用原则，规范解散审批及注销登记程序，完
善外商投资企业退出机制，现就外商投资企业
解散、清算和注销登记管理有关问题通知如
下:

1. 법률 적용 원칙 관련. <외상투자기업
심의비준 등기 관리 법률 적용에 대한 약
간의 문제에 관한 집행의견>(공상외기자
[2006]81호)에서 확정한 법률 적용 원칙
에 의거하여 외상투자기업은 해산, 청산,
법률을 처리함에 있어 <회사법>, <공사등
기관리조례> 등 유관 규정을 적용해야 한
다. 또한 중외합자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
업법 실시조례> 제90조와 제95조를, 중외
합작기업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

一、关于法律适用原则。根据《关于外商投资
的公司审批登记管理法律适用若干问题的执
行意见》(工商外企字[2006]81号)所确立的
法律适用原则，外商投资的公司办理解散、清
算、注销应当适用《公司法》、《公司登记管理
条例》的有关规定。中外合资的公司还应适用
《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第九十、九
十五条，中外合作的公司还应适用《中外合作
经营企业法实施细则》第四十八条，外商合资
或外商独资的公司还应适用《外资企业法实施

칙> 제48조를, 외상합자 또는 외상독자기업은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2조 및 제73조의 외상투자기업 해산청산에 관한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2. 해산 형태 및 심의비준 의거 관련. 외상투자기업에 <회사법> 제181조,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90조 제1-(3)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8조 제1-(3)항 등 규정이 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외상투자기업이 정관에서 정한 경영기한 만료로 인한 해산, 사법판결에 의한 해산, 법에 의한 영업집조 말소, 폐쇄명령 또는 취소로 인한 해산인 경우에는 직접 청산절차로 들어가고 심의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90조 제1-(2), (4), (5), (6)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8조 제1-(2), (4)항 또는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2조 제1-(2), (3), (6)항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경영기한 만료 이전에 사전 해산하는 경우에는 심의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90조 제1-(3)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경

细则》第七十二、七十三条关于外商投资企业解散清算的有关规定。

二、关于解散的情形及审批依据。外商投资的公司因出现《公司法》第一百八十一条、《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第九十条第一款第(三)项、《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第四十八条第一款第(三)项等规定的法定情形而解散,分别按下列规定办理:

(一) 外商投资的公司因章程规定的经营期限届满而解散,被司法裁定解散,依法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或者被撤销而解散的,直接进入清算程序,无需经过审批机关批准。

(二) 根据《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第九十条第一款第(二)、(四)、(五)、(六)项,《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第四十八条第一款第(二)、(四)项或《外资企业法实施细则》第七十二条第一款第(二)、(三)、(六)项的规定,外商投资的公司经营期限届满前提前解散的,应当经审批机关批准。

(三) 中外合资、中外合作的公司按照《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第九十条第一款第(三)项、《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第四十八条第一款第(三)项规定,

영기한 만료 이전에 일방이 해산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의비준 기관의 해산 비준 또는 인민법원의 해산 판결을 받아야 한다.

(4) 외상투자기업이 상술한 (2), (3)항의 상황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심의비준기관에 사전 해산 신청서, 회사권력기구의 회사 사전 해산에 관한 결의, 회사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제출해야 한다.

3. 청산절차 관련. 외상투자기업의 해산은 법에 따라 청산조를 설치해야 한다. 청산조는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 구성원 및 청산조 책임자 명단을 회사 등기기관에 비안해야 한다.

4. 말소절차 관련. 청산조는 청산기간에 <회사법>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채권 및 채무 정리, 청산 관련 미처리 회사 업무의 처리, 회사 체납 세금 및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을 포함한 각종 청산활동을 진행하고 청산이 종결된 후에 청산보고를 작성하여 회사 최고권력기구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아 회사 등기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5. 등기말소에 제출해야 하는 문건 관련. 외상투자기업이 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외상투자기업 등기서식 개정에 관한 통지>(공상외기자[2005]제213호) 및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제출한다. 이 중에 <외상투자기업 등기말소 제출

在经营期限届满前单方提出解散的,应当经审批机关批准解散或经人民法院裁定解散。

(四) 外商投资的公司因上述(二)、(三)款情形解散的,需向审批机关报送提前解散申请书、公司权力机构关于提前解散公司的决议及公司批准证书和营业执照。

三、关于清算程序。外商投资的公司解散,应当依法成立清算组,清算组应当自成立之日起10日内将清算组成员、清算组负责人名单向公司登记机关备案。

四、关于注销程序。清算组在清算期间应当按照《公司法》有关规定,进行包括清理债权、债务,处理与清算有关的公司未了结的业务、清缴公司所欠税款及清算过程中产生的税款等在内的各项清算活动,并在清算结束后制作清算报告,经公司权力机构或者人民法院确认后,向公司登记机关申请注销登记。

五、关于注销登记应当提交的文件。外商投资的公司申请注销登记,应根据《关于修改部分外商投资企业登记书式的通知》(工商外企字[2005]第213号)及本通知规定提交文件。其中,《外商投资的公司注销登记所需提交的文件》第4项“经依法备案、确认的清算报告”

서류 문건> 제4항 “법에 의해 비안되거나 확인 받은 청산보고”는 “주주회의, 주주총회(중외합자 및 중외합작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이 확인한 청산보고”로 수정한다. “청산보고는 말소 공고를 게재한 신문 공고를 포함한다”는 “청산보고는 청산조의 청산공고가 게재된 신문공고를 포함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5항 “세무 및 세관부문이 발급한 세금 완납증명”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 한다. 표 작성에 관한 규범적인 요구에 “청산보고에는 회사 체납세금 및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비준증서를 철회하여 상무부문의 회신을 이미 수취한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수정한다. 본 통지 수정 이후의 등기서식과 규범적 요구사항은 첨부문건에 있다.

6. 비회사제 외상투자기업의 해산, 청산 및 말소 문제 관련. 비회사제 외상투자기업이 해산, 청산 및 말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실시세칙>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및 기타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등기말소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변경되지 아니 하였다.

각 지역은 세무, 세관 등 유관부문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잘 진행되는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정기적으로 현황 통지를 진행하여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修改为“经股东会、股东大会（中外合资、中外合作的有限责任公司为董事会或联合管理委员会）或者人民法院确认的清算报告”，“清算报告应包括刊登注销公告的报纸报样”的要求修改为“清算报告应包括刊登清算组清算公告的报纸报样”，第5项“税务和海关部门出具的完税证明”不再提交。填表的规范要求中增加“清算报告应对公司清缴所欠税款及清算过程中产生的税款（包括海关、税务的完税及注销情况）、批准证书的缴销及已经收到商务部门回执的情况予以说明”，根据本通知修订后的登记书式及规范要求附后。

六、关于非公司制外商投资企业的解散、清算和注销问题。非公司制外商投资企业办理解散、清算和注销，应当适用《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实施细则》及《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外资企业法实施细则》及其他有关规定，其申请注销登记提交材料不变。

各地要加强与税务、海关等有关部门的协调和沟通，建立顺畅的工作机制，定期进行情况通报，实现信息共享。要注意收集执行中发现的新情况、新问题，加强研究，及时反馈。

현상, 새로운 문제를 증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적시에 피드백한다.

첨부문건: <외상투자기업 등기말소 제출서류 목록 및 규범 요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2008년 10월 20일

첨부문건: 외상투자기업 등기말소 제출서류 목록 및 규범요구

1. 청산조 책임자가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등기말소 신청서>>
- 2.* 기존 심의비준 기관이 말소에 동의한 비준문건
- 3.* 법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의 또는 결정
- 4.* 회사 최고권력기구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은 청산보고
5. 분공사의 등기말소 증명
6. 영업업집조 정본 및 부분
7. 기타 유관문건

규범요구:

1. 신청서는 흑색 또는 흑남색 만년필 및 서명펜으로 작성하고 글씨체가 정연해야 한다.

2. 사본으로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附件:《外商投资的公司注销登记所需提交的文件及规范要求》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商务部
二〇〇八年十月二十日

附件:外商投资的公司注销登记所需提交的文件及规范要求

1. 清算组负责人签署的《外商投资的公司注销登记申请书》
- 2.* 原审批机关同意注销的批准文件
- 3.* 依法做出的决议或者决定
- 4.* 经公司权力机构或者人民法院确认的清算报告
5. 分公司的注销登记证明
6. 营业执照正、副本
7. 其他有关文件

规范要求:

1、申请书应用黑色或蓝黑色钢笔、签字笔填写,字迹应清楚。

2、以上文件除标明复印件外,应提交原件。

3. 제출문서가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단위의 인감이 날인된 상응하는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4. 제2항 영업기한 만료, 법원 또는 중재기구의 해산 및 파산 판정,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영업집조 말소, 설립허가 취소 또는 회사설립등기의 취소시에는 제출하지 아니 한다.

5.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결의 또는 결정을 의미하며 결의 또는 결정의 내용은 신청하는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중재기구의 해산 및 파산 판정,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영업집조 말소, 설립허가 말소시에는 각각 법원 및 중재기구의 판정문건,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영업집조 말소 또는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등기관리조례>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등기관으로부터 법에 의거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취소당한 경우에는 회사등기관에 회사 설립등기 취소에 관한 결정을 제출한다.

6. 제4항 청산조의 청산공고가 게재된 신문공고, 회사의 체납세금 및 청산과정에서 발행하는 세금(세관, 세무분야에서의 세금 완납 현황 및 말소 현황 포함) 납부, 비준증서 말소 및 상무부문으로부터 이미 수취

3、以上所提交的文件若用外文书写，需提交加盖翻译单位印章的相应中文译本。

4、第2项营业期限已满、法院或仲裁机构裁定解散、破产的、行政机关责令关闭、吊销营业执照、吊销设立许可或撤销公司设立登记的不需提交。

5、第3项指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以及公司章程规定做出的决议或决定，决议或决定的内容与所申请的事项应当一致。法院或仲裁机构裁定解散、破产的，行政机关责令关闭、吊销营业执照、吊销设立许可的，应当分别提交法院、仲裁机构的裁定文件、行政机关责令关闭、吊销营业执照或吊销设立许可的决定。因违反《公司登记管理条例》有关规定被公司登记机关依法撤销公司设立登记的，提交公司登记机关撤销公司设立登记的决定。

6、第4项应包括刊登清算组清算公告的报纸报样、对公司清缴所欠税款及清算过程中产生的税款(包括海关、税务的完税情况及注销情况)、批准证书的缴销及已经收到商务部门回执情况的说明。

한 회답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7.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 약간 문제 적용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약간 문제 적용에 관한 규정 (2)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 题的规定 (二)
(2008년 5월 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 1447차 회의 통과) 법역 [2008] 6호	(2008년 5월 5일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 第1447次会议通过) 法释〔2008〕6号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2)》이 이미 2008년 5월 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 회 제1447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공포하는 바이며,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5월 12일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 司法〉若干问题的规定(二)》已于2008年5 月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7次会 议通过。现予公布,自2008年5月19日起施 行。 二〇〇八年五月十二日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정확히 적용하 고, 심판 실천을 결합하기 위해, 인민법원 이 회사 해산과 청산안건을 심리할 때 법 률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为正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结合 审判实践,就人民法院审理公司解散和清算案 件适用法律问题作出如下规定。
제1조 단독 또는 공동으로 회사의 주주 표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아래 사유 중 하나로 회사 해산소송을 제기하 고, 또 회사법 제183조 규정에 부합할 경 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第一条 单独或者合计持有公司全部股东表决 权百分之十以上的股东,以下列事由之一提起 解散公司诉讼,并符合公司法第一百八十三条 规定的,人民法院应予受理:
(1) 회사가 연속 2년 이상 동사회 또는 주 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회사의 경영관리 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一) 公司持续两年以上无法召开股东会或者 股东大会,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的;

(2) 주주 표결 시, 법정 또는 회사 정관이 규정한 비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속 2년 이상 유효한 동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못해,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3) 회사 동사간의 장기간 충돌을 동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여,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회사 경영관리에 기타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는 상황이 된 경우

주주가 알 권리 및 이익분배청구권 등의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입거나 회사의 손실 및 재산부족으로 전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회사가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취소당하고 청산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회사해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2조 주주가 회사 해산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회사에 대한 청산 진행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청산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인민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판결한 후, 회사법 제184조와 본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산을 조직하거나 별개로 인민법원에 회사 청산을 신청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二) 股东表决时无法达到法定或者公司章程规定的比例,持续两年以上不能做出有效的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的;

(三) 公司董事长期冲突,且无法通过股东会或者股东大会解决,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的;

(四) 经营管理发生其他严重困难,公司继续存续会使股东利益受到重大损失的情形。

股东以知情权、利润分配请求权等权益受到损害,或者公司亏损、财产不足以偿还全部债务,以及公司被吊销企业法人营业执照未进行清算等为由,提起解散公司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二条 股东提起解散公司诉讼,同时又申请人民法院对公司进行清算的,人民法院对其提出的清算申请不予受理。人民法院可以告知原告,在人民法院判决解散公司后,依据公司法第一百八十四条和本规定第七条的规定,自行组织清算或者另行申请人民法院对公司进行清算。

제3조 주주가 회사 해산소송 제기시,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주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보전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주주가 회사 해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

원고가 기타 주주를 피고로 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기타 주주를 제3자로 변경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만약 원고가 변경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기타 주주에 대한 소송제기를 철회해야 한다.

원고가 회사 해산소송을 제기한 경우, 반드시 기타 주주에게 고지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이 공통 원고 또는 제3자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한다.

제5조 인민법원은 회사 해산소송안건 심리 시, 반드시 조정(调解)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회사 또는 주주의 지분 매입 또는 감자(减资) 등 방식으로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에 협상 및 동의하며,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하여 회사의 존속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적시에 판

第三条 股东提起解散公司诉讼时, 向人民法院申请财产保全或者证据保全的, 在股东提供担保且不影响公司正常经营的情形下, 人民法院可予以保全。

第四条 股东提起解散公司诉讼应当以公司为被告。

原告以其他股东为被告一并提起诉讼的, 人民法院应当告知原告将其他股东变更为第三人; 原告坚持不予变更的, 人民法院应当驳回原告对其他股东的起诉。

原告提起解散公司诉讼应当告知其他股东, 或者由人民法院通知其参加诉讼。其他股东或者有关利害关系人申请以共同原告或者第三人身份参加诉讼的, 人民法院应予准许。

第五条 人民法院审理解散公司诉讼案件, 应当注重调解。当事人协商同意由公司或者股东收购股份, 或者以减资等方式使公司存续, 且不违反法律、行政法规强制性规定的, 人民法院应予支持。当事人不能协商一致使公司存续的, 人民法院应当及时判决。

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조정을 통해 회사가 원고의 지분권을 매입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조정서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지분권을 양도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지분권을 양도하거나 취소하기 전, 원고는 회사의 지분권 구입을 이유로 회사 채권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인민법원이 회사 해산소송 판결을 하는 경우, 회사 전체 주주에게 법률구속력을 가진다.

인민법원이 회사의 해산소송청구를 기각한 후, 본 소송의 주주 또는 기타 주주가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회사 해산소송을 다시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제7조 회사는 회사법 제184조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고, 자체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고, 채권인이 인민법원의 청산조 지정 및 청산진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 (1) 회사해산기한이 지나고도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 (2) 청산조를 구성하였지만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경우

经人民法院调解公司收购原告股份的,公司应当自调解书生效之日起六个月内将股份转让或者注销。股份转让或者注销之前,原告不得以公司收购其股份为由对抗公司债权人。

第六条 人民法院关于解散公司诉讼作出的判决,对公司全体股东具有法律约束力。

人民法院判决驳回解散公司诉讼请求后,提起该诉讼的股东或者其他股东又以同一事实和理由提起解散公司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七条 公司应当依照公司法第一百八十四条的规定,在解散事由出现之日起十五日内成立清算组,开始自行清算。

有下列情形之一的,债权人申请人民法院指定清算组进行清算的,人民法院应予受理:

- (一)公司解散逾期不成立清算组进行清算的;
- (二)虽然成立清算组但故意拖延清算的;
- (三)违法清算可能严重损害债权人或者股东利益的。

(3) 위법 청산이 채권인 또는 주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본 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되나 채권인이 아직 청산신청을 하지 않아 회사 주주가 인민법원의 청산조 지정 및 회사 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이 회사청산안건을 수리할 때는 반드시 적시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조를 구성해야 한다.

청산조 구성원은 아래 인원 또는 기구에서 구성할 수 있다.

- (1) 회사 주주,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 (2) 법에 따라 설립한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
- (3) 법에 따라 설립한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 중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업종종사자격을 취득한 인원

제9조 인민법원이 지정한 청산조 구성원에게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인과 주주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청산조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 (1) 법률 또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 (2) 업종 종사 능력 또는 민사행위능력을

具有本条第二款所列情形,而债权人未提起清算申请,公司股东申请人民法院指定清算组对公司进行清算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八条 人民法院受理公司清算案件,应当及时指定有关人员组成清算组。

清算组成员可以从下列人员或者机构中产生:

- (一) 公司股东、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
- (二) 依法设立的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破产清算事务所等社会中介机构;
- (三) 依法设立的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破产清算事务所等社会中介机构中具备相关专业知识并取得执业资格的人员。

第九条 人民法院指定的清算组成员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可以根据债权人、股东的申请,或者依职权更换清算组成员:

- (一) 有违反法律或者行政法规的行为;
- (二) 丧失执业能力或者民事行为能力;

상실한 경우

(3) 회사 또는 채권인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10조 회사가 법에 따라 청산을 마무리하고登記말소를 하기 전까지, 회사의 민사소송은 회사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회사가 청산조를 구성한 경우 청산조 책임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다. 청산조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原 법정대표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다.

제11조 회사 청산 시, 청산조는 회사법 제186조 규정에 따라,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채권인에게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사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규모와 영업지역범위에 따라 전국 또는 회사 등록등기지역의 성급수준의 영향력 있는 신문에 공고한다.

청산조가 전항 규정에 따라 통지와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인이 적시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인이 청산조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제12조 회사청산 시, 채권인이 청산조가 조사 결정한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산조에게 다시 조사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청산조가 다시 조사 결정하지 않거나 채권인이 조사 결정한 채권에 여전히

(三)有严重损害公司或者债权人利益的行为。

第十条 公司依法清算结束并办理注销登记前,有关公司的民事诉讼,应当以公司的名义进行。

公司成立清算组的,由清算组负责人代表公司参加诉讼;尚未成立清算组的,由原法定代表人代表公司参加诉讼。

第十一条 公司清算时,清算组应当按照公司法第一百八十六条的规定,将公司解散清算事宜书面通知全体已知债权人,并根据公司规模和营业地域范围在全国或者公司注册登记地省级有影响的报纸上进行公告。

清算组未按照前款规定履行通知和公告义务,导致债权人未及时申报债权而未获清偿,债权人主张清算组成员对因此造成的损失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十二条 公司清算时,债权人对清算组核定的债权有异议的,可以要求清算组重新核定。清算组不予重新核定,或者债权人对重新核定的债权仍有异议,债权人以公司为被告向人民法院提起诉讼请求确认的,人民法院应予受

이익이 있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인민법원에 소송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제13조 채권인이 규정한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회사청산절차 종결 이전에 보충 신고할 경우, 청산조는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회사청산 절차의 종결은 청산보고가 동사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4조 채권인이 보충 신고한 채권은 회사의 미분배 재산으로 법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회사가 아직 분배하지 않은 재산으로 전액 상환할 수 없으며, 채권인이 주주가 잉여재산 분배 중 이미 취득한 재산으로 상환할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단, 채권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권인 또는 청산조가 회사의 미분배 재산과 잉여 재산 분배 중 주주가 기취득한 재산으로 보충 신고한 채권을 전액 상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제15조 회사가 자체적으로 청산을 진행할 경우, 청산방안은 반드시 동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청산방안은

理。

第十三条 债权人在规定的期限内未申报债权,在公司清算程序终结前补充申报的,清算组应予登记。

公司清算程序终结,是指清算报告经股东会、股东大会或者人民法院确认完毕。

第十四条 债权人补充申报的债权,可以在公司尚未分配财产中依法清偿。公司尚未分配财产不能全额清偿,债权人主张股东以其在剩余财产分配中已经取得的财产予以清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债权人因重大过错未在规定时间内申报债权的除外。

债权人或者清算组,以公司尚未分配财产和股东在剩余财产分配中已经取得的财产,不能全额清偿补充申报的债权为由,向人民法院提出破产清算申请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十五条 公司自行清算的,清算方案应当报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确认;人民法院组织清算的,清算方案应当报人民法院确认。未经确认的清算方案,清算组不得执行。

반드시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청산조는 확인을 거치지 않은 청산 방안을 집행할 수 없다.

확인 받지 않은 청산방안을 집행하여 회사 또는 채권인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회사, 주주 또는 채권인이 청산조 구성원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이 청산을 조직하는 경우, 청산조는 성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산을 마쳐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청산완료에 어려울 경우, 청산조는 인민법원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 인민법원이 지정한 청산조가 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재무제표와 재산명세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회사재산이 채무상환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한 경우 채권인과 협의하여 채무상환 관련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채무상환방안이 모든 채권인의 확인을 거치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청산조의 신청에 따라 결정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청산조는 해당 상환방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한 후, 반드시 인민법원에 청산절차 종결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执行未经确认的清算方案给公司或者债权人造成损失, 公司、股东或者债权人主张清算组成员承担赔偿责任的, 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十六条 人民法院组织清算的, 清算组应当自成立之日起六个月内清算完毕。

因特殊情况无法在六个月内完成清算的, 清算组应当向人民法院申请延长。

第十七条 人民法院指定的清算组在清理公司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时, 发现公司财产不足清偿债务的, 可以与债权人协商制作有关债务清偿方案。

债务清偿方案经全体债权人确认且不损害其他利害关系人利益的, 人民法院可依清算组的申请裁定予以认可。清算组依据该清偿方案清偿债务后, 应当向人民法院申请裁定终结清算程序。

채권인이 채무상환방안에 대해 확정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청산조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제18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동사 및 지주주주가 법정기한 내에 청산조를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하지 않아 회사 재산의 가치절하, 유실, 훼손 또는 멸실이 발생하여 채권인이 손실 초래 범위 내에서 회사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동사 및 지주주주의 의무이행 태만으로 회사 주요 재산, 장부, 중요문건 등을 멸실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채권인이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상환책임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지지해야 한다.

상술한 상황들이 실제 통제인이 원인이 되어 조성되었고, 채권인이 통제인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질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19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동사와 지주 주주 및 회사 실제 통제인이 회사 해산 이후 악의로 회사재산으로 인해 채권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법에 따라 청산하지 않고, 허위 청산

채권人对债务清偿方案不予确认或者人民法院不予认可的,清算组应当依法向人民法院申请宣告破产。

第十八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董事和控股股东未在法定期限内成立清算组开始清算,导致公司财产贬值、流失、毁损或者灭失,债权人主张其在造成损失范围内对公司债务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董事和控股股东因怠于履行义务,导致公司主要财产、帐册、重要文件等灭失,无法进行清算,债权人主张其对公司债务承担连带清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上述情形系实际控制人原因造成,债权人主张实际控制人对公司债务承担相应民事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十九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董事和控股股东,以及公司的实际控制人在公司解散后,恶意处置公司财产给债权人造成损失,或者未经依法清算,以虚假的清算报告骗取公司登记机关办理法人注销登记,债权

보고서로 회사등기기관을 편취하여 법인등기를 취소하여 채권인이 회사채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20조 회사의 해산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청산 완료 후, 등기취소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청산을 진행하지 않고 등기 취소처리를 신청하여 회사가 청산을 진행할 수 없고, 채권인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동사 및 지주 주주 및 회사의 실제 통제인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상환책임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회사가 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등기 취소 처리하였으며, 주주 또는 제3자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취소 처리 시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응답하였고, 채권인이 회사채무에 대해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질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21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동사, 지주 주주 및 회사의 실제 통제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그 중 1인 또는 여러 명은 본 규정 제18조와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 후, 기타 인원이 과실의 대소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22조 회사해산 시, 주주가 미납한 출자

人主张其对公司债务承担相应赔偿责任的, 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二十条 公司解散应当在依法清算完毕后, 申请办理注销登记。公司未经清算即办理注销登记, 导致公司无法进行清算, 债权人主张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董事和控股股东, 以及公司的实际控制人对公司债务承担清偿责任的, 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公司未经依法清算即办理注销登记, 股东或者第三人在公司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时承诺对公司债务承担责任, 债权人主张其对公司债务承担相应民事责任的, 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二十一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董事和控股股东, 以及公司的实际控制人为二人以上的, 其中一人或者数人按照本规定第十八条和第二十条第一款的规定承担民事责任后, 主张其他人员按照过错大小分担责任的, 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二十二条 公司解散时, 股东尚未缴纳的出

액은 청산재산으로 해야 한다. 주주가 미납한 출자금액은 기한 내 미지급한 출자액과 회사법 제26조와 제81조 규정에 따라 분기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출자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회사재산이 채무상환액보다 부족할 때, 채권채권인이 출자를 미납한 주주, 회사 설립시의 기타주주 또는 발기인이 출자 미납범위 내에서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 상환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23조 청산조 구성원이 청산사무에 종사할 때,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채권인에게 손해를 초래하고 회사 또는 채권인이 배상책임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가 연속 180일 이상 단독 또는 공동으로 회사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법 제15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산조 구성원에게 전항에서 상술한 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해야 한다.

회사가 이미 청산을 완비 및 말소하고, 상술한 주주가 회사법 제152조 제3항 규정을 참조로 직접 청산조 구성원을 피고로 하고, 기타 주주를 제3자로 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资均应作为清算财产。股东尚未缴纳的出资, 包括到期应缴未缴的出资, 以及依照公司法第二十六条和第八十一条的规定分期缴纳尚未届满缴纳期限的出资。

公司财产不足以清偿债务时, 债权人主张未缴出资股东, 以及公司设立时的其他股东或者发起人在未缴出资范围内对公司债务承担连带清偿责任的, 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二十三条 清算组成员从事清算事务时, 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公司章程给公司或者债权人造成损失, 公司或者债权人主张其承担赔偿责任的, 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连续一百八十日以上单独或者合计持有公司百分之一以上股份的股东, 依据公司法第一百五十二条第三款的规定, 以清算组成员有前款所述行为为由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 人民法院应予受理。

公司已经清算完毕注销, 上述股东参照公司法第一百五十二条第三款的规定, 直接以清算组成员为被告、其他股东为第三人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 人民法院应予受理。

수리해야 한다.

제24조 회사 해산소송안건과 회사청산안건은 회사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회사 주소지는 회사의 주요 사무처리기구 소재지이다. 회사 사무처리기구 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 등록지역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기층(基层) 인민법원은 현(县), 현급 시 또는 구의 회사등기기관이 등기를 허가한 회사의 해산소송안건과 회사청산안건을 관할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지구, 지(地)급 시 이상의 회사등기기관이 등기를 허가한 회사의 해산소송안건과 회사청산안건을 관할한다.

第二十四条 解散公司诉讼案件和公司清算案件由公司住所地人民法院管辖。公司住所地是指公司主要办事机构所在地。公司办事机构所在地不明确的，由其注册地人民法院管辖。

基层人民法院管辖县、县级市或者区的公司登记机关核准登记公司的解散诉讼案件和公司清算案件；中级人民法院管辖地区、地级市以上的公司登记机关核准登记公司的解散诉讼案件和公司清算案件。

8. 외국자본의 비정상적 철수와 관련한 다국적 추궁 및 소송 관련 통지

<외자의 비정상적 철수와 중국 이해관계자의 다국적 추궁 및 소송 업무가이드> 발표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상무/외사/공안/사법 주관부문: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에서 소수의 외상 투자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현상이 출현하였고, 중국측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다. 또한 중국의 양방향 경제무역교류 및 지역의 사회적 안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외자의 비정상적인 철수 이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며 이러한 유형의 사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자의 비정상적 철수와 중국 이해관계자의 다국적 추궁 및 소송 업무가이드>를 제정하였다. 이를 지금 발표하니 <가이드>에 근거하여 다국적 추궁 및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길 바란다. 각 성/구/시 상무주관부문은 외사, 사법행정, 공안, 법원 등 기관과의 공동 업무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고 업무협조와 공동처리를 강화하여 중국측 이해관계자가 실행할 수 있는 사법구제와 협조를 제공하고 도피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토록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상무부반공청

关于印发《外资非正常撤离中国相关利益方跨国追究与诉讼工作指引》的通知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商务、外事、公安、司法主管部门:

近年来,部分地区出现少数外商投资企业非正常撤离现象,给中方相关利益方造成严重经济损失,同时也对我国的双边经贸往来和地方社会稳定造成一定消极影响。为妥善解决外资非正常撤离后的相关问题,消除各种消极影响,预防此类事件的再度发生,我们制订了《外资非正常撤离中方相关利益方跨国追究与诉讼工作指引》。现印发给你们,请根据《指引》做好跨国追究与诉讼相关工作。各省区市商务主管部门要充分利用与外事、司法行政、公安、法院等部门建立的联合工作机制,加强工作协调配合,为中方相关利益人提供切实可行的司法救济与协助,追究逃逸者的法律责任,最大限度地挽回当事人的经济损失。

特此通知

商务部办公厅

外交部办公厅

司法部办公厅

公安部办公厅

二〇〇八年十一月十九日

외교부반공청
사법부반공청
공안부반공청
2008년 11월 19일

외자의 비정상적 철수와 중국측 이해관계 자의 다국적 추궁 및 소송 업무가이드

1. 중국은 여러 나라와 <민/상사 사법협조조약>, <형사 사법협조조약> 및 <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
(<http://www.fmprc.gov.cn/chn/gjw/tyfl/default.htm> 참고바람) 상술한 조약은 다국적 민/상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형사범죄를 타격하고 탈주범을 체포하는 측면에서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외자의 비정상적 철수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분쟁 측면에서도 필요한 법률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 외자의 비정상적 철수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측 당사자는 즉시 유관 사법 주관 부문(법원 또는 검찰기관)에 민/상사 또는 형사 안건의 입안을 신청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주관부문은 각자의 시스템에 따른 업무절차 및 중국과 해당 국가가 체결한 <민/상사 사법협조조약> 또는 <형사 사법협조조약>에 의거하여 조약에서 정한 중앙기관을 통해 본국에서 외국측에 사법협조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측은 체결된 조약에 따라 중국측에 사법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 소재한 소송당사자에게

外资非正常撤离中方相关利益方跨国追与 诉讼工作指引

一、我国已与许多国家缔结了《民商事司法协助条约》、《刑事司法协助条约》和《引渡条约》(具体可参阅: <http://www.fmprc.gov.cn/chn/gjw/tyfl/default.htm>), 上述条约为有效处理跨国民商事案件、打击刑事犯罪、追捕逃犯奠定了法律基础, 为处理外资非正常撤离导致的经济纠纷提供了必要的法律依据。

二、外资非正常撤离事件发生后, 中方当事人要及时向有关司法主管部门(法院或侦查机关)申请民商事或刑事案件立案。根据案件具体情况, 各主管部门可根据各自系统内工作程序及我国和相应国家签订的《民商事司法协助条约》或《刑事司法协助条约》, 通过条约规定的中央机关在本国向外方提出司法协助请求。外方根据所缔约条约有义务向中方提供司法协助(例如向位于该国的诉讼当事人送达传票、起诉书等司法文书, 调取相关证据, 协助调查涉案人员和资金的下落, 搜查扣押相关物品等)。

소환장, 기소장 등 사법문건의 송달, 유관 증거의 조사 및 채집, 혐의자 및 자금의 행방에 대한 협조 조사, 관련 물품의 수색 및 압수 등)

3. 정상적인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실을 야기한 경우, 최고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적용하는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2)>의 최신규정에 의거하여,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 주식유한회사의 지분통제 주주 및 동사, 회사의 실제 통제자인 외국기업 또는 개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상환책임을 진다.

4. 중국측 당사자가 기소한 민사소송이 중국법원에서 승소한 후 중국 경내에 패소한 외국당사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승소측은 중국과 해당 국가가 체결한 <민/상사 사법협조조약>의 유관 규정 또는 패소측의 해외재산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에 중국법원의 효력이 있는 판결 및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민/상사 사법협조조약>은 상대국 국민과 해당국가 국민에게 서로 동등한 소송권리를 부여한다. 중국측 채권자는 이에 따라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국 국민이 해외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재국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三、不履行正常清算义务给债权人造成损失的, 根据最高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规定(二)》的最新规定, 作为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控股股东和董事以及公司实际控制人的外国企业或个人仍应承担相应民事责任, 对公司债务承担连带清偿责任。

四、中方当事人提起的民事诉讼在我国法院胜诉后, 如败诉的外国当事人在中国无可供执行的财产, 胜诉方可依据中国和相应国家签订的《民商事司法协助条约》的相关规定或依据败诉方在国外的财产所在地的法律, 请求外国有管辖权的法院承认和执行中国法院的生效判决、裁定。

五、我国与外国缔结的《民商事司法协助条约》相互赋予对方国民与本国国民同等的诉讼权利。中方债权人可据此在已缔约条约国家民事诉讼, 有经济困难的我国公民在外诉讼, 可根据所在国法律申请相应法律援助。

6. 악의를 가지고 체납 도피하고 세액이 큰 범죄 혐의가 있는 극소수의 용의자의 경우, 국가 유관 주관기관이 입안한 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조약에서 약정된 중앙기관 또는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 용의자 도피국에 인도청구 또는 형사소송 이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범죄 용의자가 법률추궁을 받도록 한다.

六、对极少数恶意逃避欠缴，税额巨大，涉嫌犯罪的嫌疑人员，国家有关主管部门在立案后，可视具体案情通过条约规定的中央机关或外交渠道向犯罪嫌疑人逃往国提出引渡请求或刑事诉讼移转请求，以最大程度地确保犯罪嫌疑人受到法律追究。